

2023회계연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행	정	안	전	부	소관
중	앙	선	거	관	리
진	실	·	화	해	를
인	사	혁	신	처	소관
경		찰		청	소관
소		방		청	소관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목 차

I. 소관부처 결산	1
II. 심사경과	3
III. 결산개요	4
【행정안전부 소관】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47
【인사혁신처 소관】	58
【경찰청 소관】	73
【소방청 소관】	91
IV.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101
【행정안전부 소관】	1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11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115
【인사혁신처 소관】	121
【경찰청 소관】	123
【소방청 소관】	128
V. 대체토론의 요지	132
VI.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135
VII. 찬반토론의 요지	136
VIII. 심사결과	137
IX. 소수의견의 요지	138
X. 기타 필요한 사항	138
※ 별첨 2023회계연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결산 심사결과	139

2023회계연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2024. 9. .

행정안전위원회

I. 소관부처 결산

1. 행정안전부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4. 인사혁신처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 공무원연금기금

5. 경찰청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 세입 및 세출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세출

6. 소방청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Ⅱ. 심사경과

1. 제 출 일 자 : 2024년 5월 31일

2. 회 부 일 자 : 2024년 6월 11일

3.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9. 2.)

행정안전부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인사혁신처 소관, 경찰청 소관, 소방청 소관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원회(2024. 9.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인사혁신처 소관,
경찰청 소관, 소방청 소관 :
(상정·심사·의결)

행정안전부 소관: (상정·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원회(2024. 9. 5.)

행정안전부 소관: (상정·심사·의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9. 5.)

(상정·소위원회 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
(원안가결))

Ⅲ. 결산개요

【행정안전부 소관】

1. 세입·세출 결산

- 2023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기금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2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은 없음.
-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686억 7,100만원 이나 1,978억 2,1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470억 7,000만원이 수납 (수납률 74.3%)되었고 507억 5,1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632억 1,000만원이나 1,819억 200 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323억 200만원이 수납(수납률 72.7%)되었고 496억원이 미수납되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액이 54억 6,100만원이나 159억 1,9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47억 6,900만원이 수납(수납률 92.8%)되었고 11억 5,1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행정안전부 회계별·계정별 세입 결산(총계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일반회계	63,210	181,902	132,302	49,600	0	72.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461	15,919	14,769	1,151	0	92.8
지역자율계정	1,931	11,590	11,444	145	0	98.7
지역지원계정	3,530	4,330	3,324	1,005	0	76.8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	-	-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	-	-	-	-
합 계	68,671	197,821	147,070	50,751	0	74.3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액은 80조 4,878억 2,900만원, 예산현액은 80조 6,075억 5,900만원이며, 이 중 72조 3,537억 5,400만원이 지출(집행률 89.8%)되었고 309억 1,700만원이 이월, 8조 2,228억 8,800만원이 불용되었음.

□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78조 8,432억 6,600만원, 예산현액은 78조 9,629억 3,000만원이며, 이 중 70조 7,118억 9,500만원이 지출(집행률 89.6%)되었고 307억 6,500만원이 이월, 8조 2,202억 7,000만원이 불용되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조 6,445억 6,300만원, 예산현액은 1조 6,446억 3,000만원이며, 이 중 1조 6,418억 5,900만원이 지출(집행률 99.8%)되었고 152억원이 이월, 26억 1,9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행정안전부 회계별·계정별 세출 결산(총계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일반회계	78,843,266	78,962,930	70,711,895	30,765	8,220,270	89.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644,563	1,644,630	1,641,859	152	2,619	99.8
지역자율계정	225,653	225,653	225,653	-	-	100.0
지역지원계정	1,402,142	1,402,209	1,399,438	152	2,619	99.8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1,445	11,445	11,445	-	-	100.0
세종특별자치시계정	5,323	5,323	5,323	-	-	100.0
합 계	80,487,829	80,607,559	72,353,754	30,917	8,222,888	89.8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 총수입·총지출 결산

(1) 일반회계

가. 총수입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수입은 예산액이 632억 1,000만원이나 1,819억 2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323억 200만원이 수납(수납률 72.7%)되었고 496억원이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관/항/목	예산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재산수입(11)	6,172	18,607	14,459	4,148	-	77.7
관유물대여료(51)	3,432	3,636	2,892	744	-	79.5
토지대여료(511)	521	118	86	31	-	73.4
건물대여료(512)	2,911	3,518	2,805	713	-	79.7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54)	2,740	14,971	11,567	3,404	-	77.3
기타재산이자수입(546)	2,740	14,971	11,567	3,404	-	77.3
경상이전수입(12)	48,332	152,943	107,980	44,963	-	70.6
별금,물수금및과태료(56)	0	450	81	369	-	18.0
물수금및추징금(562)	-	48	-	48	-	-
징계부과금(564)	-	50	-	50	-	-
과징금(565)	-	352	81	270	-	23.01
변상금및위약금(57)	890	1,323	313	1,010	-	23.7
변상금(571)	-	8	-	8	-	-
위약금(572)	890	1,316	313	1,002	-	23.8
가산금(58)	-	3	1	1	-	58.4
가산금(581)	-	3	1	1	-	58.4
기타경상이전수입(59)	47,442	151,167	107,584	43,583	-	71.2

관/항/목	예산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기타경상이전수입(596)	47,442	151,167	107,584	43,583	-	71.2
재화및용역판매수입(13)	949	1,722	1,233	489	-	71.6
면허료및수수료(65)	19	38	38	-	-	100.0
면허료및수수료(651)	19	38	38	-	-	100.0
잡수입(69)	930	1,684	1,195	489	-	71.0
기타잡수입(691)	930	1,684	1,195	489	-	71.0
수입대체경비수입(14)	7,757	8,552	8,552	-	-	100.0
잡수입(69)	7,757	8,552	8,552	-	-	100.0
기타잡수입(691)	7,757	8,552	8,552	-	-	100.0
관유물매각대(15)	-	77	77	-	-	100.0
고정자산매각대(71)	-	77	77	-	-	100.0
기계기구매각대(712)	-	76	76	-	-	100.0
기타고정자산매각대(713)	-	1	1	-	-	100.0
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자산(73)	-	0.2	0.2	-	-	100.0
유동자산매각대(732)	-	0.2	0.2	-	-	100.0
합 계	63,210	181,902	132,302	49,600	-	72.7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총지출

① 총괄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지출은 예산액이 78조 8,432억 6,600만원, 예산현액은 78조 9,629억 3,000만원이며, 이 중 70조 7,118억 9,500만원이 지출(집행률 89.6%)되었고 307억 6,500만원이 이월, 8조 2,202억 7,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분야/부문/프로그램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일반·지방행정	78,188,881	78,287,348	70,048,391	27,548	8,211,409	89.5
일반행정	929,647	971,173	931,854	13,941	25,377	96.0
기록물관리	46,533	46,541	45,037	17	1,487	96.8
민주화지원및과거사정리	293,683	297,291	281,192	11,306	4,793	94.6
정부의견	12,774	12,849	12,289	76	485	95.6
청사관리	215,482	223,089	211,837	2,520	8,732	95.0
행정안전행정지원	361,175	391,403	381,500	22	9,881	97.5
정부자원관리	717,461	772,782	748,509	12,729	11,544	96.9
인사관리	239	239	229	0	10	96.0
전자정부	674,835	730,314	708,392	11,567	10,356	97.0
정부혁신조직	42,387	42,228	39,887	1,162	1,179	94.5
지방행정·재정지원	76,541,773	76,543,393	68,368,028	878	8,174,487	89.3
이북5도	2,168	2,131	1,832	234	65	86.0
지방교부세	75,288,266	75,288,266	67,119,414	0	8,168,852	89.1
지방자치분권	55,157	55,226	52,272	519	2,435	94.7
지방자치인재개발	14,295	15,161	14,653	0	507	96.7
지방재정경제	26,201	26,201	24,588	25	1,588	93.8
지역발전	1,155,686	1,156,408	1,155,269	100	1,039	99.9
공공질서및안전	654,385	675,371	663,293	3,217	8,861	98.2
경찰	65,063	65,885	64,514	27	1,344	97.9
과학수사	65,063	65,885	64,514	27	1,344	97.9
재난관리	589,322	609,486	598,779	3,190	7,517	98.2
안전관리	116,778	118,365	116,477	218	1,670	98.4
재난관리	221,985	240,997	239,214	355	1,428	99.3
재난안전기술개발	104,151	104,197	103,142	0	1,056	99.0
재난안전정보화	146,408	145,927	139,947	2,616	3,363	95.9
사회복지	0	211	211	0	0	100.0
취약계층지원	0	211	211	0	0	100.0
일자리지원	0	211	211	0	0	100.0
합 계	78,843,266	78,962,930	70,711,895	30,765	8,220,270	89.6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이월·불용

□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월률)이 큰 사업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91억 1,300만원 중 42억 2,900만원(이월률 46.4%)을 이월하였고,

‘이북5도청사시설개보수’ 사업은 예산현액 5억 4,400만원 중 2억 3,400만원(이월률 43.0%)을 이월하였으며,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재건축’ 사업은 예산현액 70억 5,000만원 중 23억 9,000만원(이월률 33.9%)을 이월하였고,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은 예산현액 30억 2,000만원 중 5억 1,900만원(이월률 17.2%)을 이월하였으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421억 3,500만원 중 68억 8,000만원(이월률 16.3%)을 이월하였음.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지출 이월률 상위 5개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이월액 (B)	불용액	이월률 (B/A)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6,920	9,113	4,672	4,229	212	46.4
이북5도청사시설개보수	581	544	272	234	38	43.0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재건축	7,961	7,050	4,659	2,390	0.1	33.9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시스 템 구축(정보화)	2,681	3,020	2,449	519	52	17.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24,922	42,135	34,985	6,880	270	16.3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불용률)이 큰 사업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단위위령시설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24억 4,600만원을 전액(불용률 100.0%)을 불용하였고,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총액)’ 사업은 예산현액 7,600만원 중 2,800만원(불용률 36.9%)을 불용하였으며,

‘재난협력실(총액)’ 사업은 예산현액 1억 9,200만원 중 5,500만원(불용률 28.7%)을 불용하였고,

‘자치분권위원회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12억 8,500만원 중 3억 5,300만원(불용률 27.4%)을 불용하였으며,

‘지방재정경제실(총액)’ 사업은 예산현액 2억 5,800만원 중 6,900만원(불용률 26.7%)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지출 이월률 상위 5개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B)	불용률 (B/A)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전국단위위령시설조성	6,140	2,446	-	-	2,446	100.0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 (총액)	76	76	48	-	28	36.9
재난협력실(총액)	192	192	137	-	55	28.7
자치분권위원회운영	1,616	1,285	932	-	353	27.4
지방재정경제실(총액)	258	258	189	-	69	26.7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마지막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불용액 합계(미집행률)이 큰 사업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단위위령시설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24억 4,600만원을 전액(미집행률 100.0%)을 미집행하였고,

‘이북5도청사시설개보수’ 사업은 예산현액 5억 4,400만원 중 2억 7,200만원(미집행률 49.9%)을 미집행하였으며,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91억 1,300만원 중 44억 4,100만원(미집행률 48.7%)을 미집행하였고,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총액)’ 사업은 예산현액 7,600만원 중 2,800만원(미집행률 36.9%)을 미집행하였으며,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재건축’ 사업은 예산현액 70억 5,000만원 중 23억 9,000만원(미집행률 33.9%)을 미집행하였음.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지출 미집행률 상위 5개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이월액 (B)	불용액 (C)	미집행액 (D=B+C)	미집행률 (D/A)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전국단위위령시설조성	6,140	2,446	-	-	2,446	2,446	100.0
이북5도청사시설개보수	581	544	272	234	38	272	49.9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6,920	9,113	4,672	4,229	212	4,441	48.7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 (총액)	76	76	48	-	28	28	36.9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재건축	7,961	7,050	4,659	2,390	0.1	2,390	33.9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가. 총수입

□ 2023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총수입은 예산액이 54억 6,100만원이나 159억 1,9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47억 6,900만원이 수납(수납률 92.8%)되었고 11억 5,1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계정/목	예산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지역자율계정	1,931	11,590	11,444	145	-	98.7
재산수입(11)	21	985	954	31	-	96.8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54)	21	985	954	31	-	96.8
기타재산이자수입(546)	21	985	954	31	-	96.8
경상이전수입(12)	1,910	10,604	10,490	114	-	98.9
기타경상이전수입(59)	1,910	10,604	10,490	114	-	98.9
기타경상이전수입(596)	1,910	10,604	10,490	114	-	98.9
지역지원계정	3,530	4,330	3,324	1,005	-	76.8
재산수입(11)	29	207	147	60	-	70.9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54)	29	207	147	60	-	70.9
기타재산이자수입(546)	29	207	147	60	-	70.9
경상이전수입(12)	3,501	4,123	3,178	945	-	77.1
별금,물수금및과태료(56)	-	240	-	240	-	-
과징금(565)	-	240	-	240	-	-
기타경상이전수입(59)	3,501	3,883	3,178	705	-	81.8
기타경상이전수입(596)	3,501	3,883	3,178	705	-	81.8
합 계	5,461	15,919	14,769	1,151	-	92.8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총지출

① 총괄

- 2023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총지출은 예산액이 1조 6,445억 6,300만원, 예산현액은 1조 6,446억 3,000만원이며, 이 중 1조 6,418억 5,900만원이 지출(집행률 99.8%)되었고 1억 5,200만원이 이월, 26억 1,9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분야/부문/프로그램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일반·지방행정	711,241	711,308	708,871	37	2,400	99.7
정부자원관리	22,231	22,231	22,202	0	29	99.9
정부혁신조직	22,231	22,231	22,202	0	29	99.9
지방행정·재정지원	689,010	689,077	686,669	37	2,371	99.7
지방자치분권	27,271	27,271	27,271	0	0	100.0
지방재정경제	352,500	352,567	352,540	0	27	100.0
지역발전	309,239	309,239	306,858	37	2,344	99.2
공공질서및안전	717,839	717,839	717,701	0	138	100.0
재난관리	717,839	717,839	717,701	0	138	100.0
안전관리	708,579	708,579	708,441	0	138	100.0
재난안전기술개발	9,260	9,260	9,260	0	0	100.0
사회복지	215,483	215,483	215,287	115	81	99.9
취약계층지원	215,483	215,483	215,287	115	81	99.9
일자리지원	215,483	215,483	215,287	115	81	99.9
합계	1,644,563	1,644,630	1,641,859	152	2,619	99.8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이월·불용

□ 2023회계연도 이월이 있었던 사업은 총 2개 세부사업임.

□ ‘지역발전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52억 2,800만원 중 3,700만원 (이월률 0.7%)을 이월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사업은 예산현액 1,993억 5,300만원 중 1억 1,500만원(이월률 0.1%)을 이월하였음.

[2023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총지출 이월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이월액 (B)	불용액	이월률 (B/A)
지역발전활성화 (지역지원계정)	5,226	5,228	5,043	37	148	0.7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지원계정)	199,353	199,353	199,167	115	71	0.1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불용률)이 큰 사업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사업은 예산현액 63억 4,000만원 중 14억 9,400만원(불용률 23.6%)을 불용하였고,

‘지역발전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52억 2,800만원 중 1억 4,800만원(불용률 2.8%)을 불용하였으며,

‘접경권발전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516억 1,000만원 중 7억 200만원 (불용률 1.4%)을 불용하였고,

‘마을기업육성사업’ 사업은 예산현액 69억 6,500만원 중 1,000만원 (불용률 0.1%)을 불용하였으며,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확산’ 사업은 예산현액 222억 3,100만원 중 2,900만원(불용률 0.1%)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지출 이월률 상위 5개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B)	불용률 (B/A)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지역지원계정)	6,342	6,340	4,846	0	1,494	23.6
지역발전활성화 (지역지원계정)	5,226	5,228	5,043	37	148	2.8
접경권발전지원 (지역지원계정)	51,610	51,610	50,908	0	702	1.4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역지원계정)	6,965	6,965	6,955	0	10	0.1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확산 (지역지원계정)	22,231	22,231	22,202	0	29	0.1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마지막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불용액 합계(미집행률)이 큰 사업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사업은 예산현액 63억 4,000만원 중 14억 9,400만원(미집행률 23.6%)을 미집행하였고,

‘지역발전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52억 2,800만원 중 1억 8,500만원 (미집행률 2.8%)을 미집행하였으며,

‘접경권발전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516억 1,000만원 중 7억 200만원 (미집행률 1.4%)을 미집행하였고,

‘마을기업육성사업’ 사업은 예산현액 69억 6,500만원 중 1,000만원 (미집행률 0.1%)을 미집행하였으며,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확산’ 사업은 예산현액 222억 3,100만원 중 2,900만원(미집행률 0.1%)을 미집행하였음.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지출 미집행률 상위 5개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이월액 (B)	불용액 (C)	미집행액 (D=B+C)	미집행률 (D/A)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지역지원계정)	6,342	6,340	4,846	0	1,494	1,494	23.6
지역발전활성화 (지역지원계정)	5,226	5,228	5,043	37	148	185	3.5
접경권발전지원 (지역지원계정)	51,610	51,610	50,908	0	702	702	1.4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역지원계정)	6,965	6,965	6,955	0	10	10	0.1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확산 (지역지원계정)	22,231	22,231	22,202	0	29	29	0.1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예비비 지출

□ 행정안전부는 2023회계연도에 예비비를 배정받지 않았음.

4. 재무결산

가. 재정상태 분석

- 2023년 말 기준 행정안전부의 자산총액은 12조 1,569억 6,700만원으로, 전기 말 대비 2,871억 9,500만원(2.4%)증가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일반유형자산의 증가(3,458억 7,000만원), 무형자산의 증가(639억 2,900만원) 등에 있음.
- 부채총액은 1,547억 3,500만원으로 전년 말 대비 145억 5,100만원(10.4%)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장기차입부채가 114억 8,8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은 12조 22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26억 4,400만원(2.3%)이 증가하였음.

[2023년도 행정안전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A)	2022(B)	증감	
			증감액(C=A-B)	증감율(C/B)
I. 자산(a)	12,156,967	11,869,772	287,195	2.4 %
· 유동자산	105,347	229,739	-124,392	-54.1 %
· 투자자산	9,325	8,138	1,187	14.6 %
· 일반유형자산	11,652,109	11,306,239	345,870	3.1 %
· 무형자산	385,119	321,190	63,929	19.9 %
· 기타비유동자산	5,066	4,466	600	13.4 %
II. 부채(b)	154,735	140,184	14,551	10.4 %
· 유동부채	57,050	52,751	4,299	8.1 %
· 장기차입부채	97,685	86,197	11,488	13.3 %
· 장기충당부채	-	1,236	-1,236	-100.0 %
순자산(a-b)	12,002,232	11,729,588	272,644	2.3 %

※ 2023(A) : 2023년 12월 31일자 잔액
 2022(B) : 2022년 12월 31일자 잔액

자산의 종류	설 명
유동자산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채권 등)
투자자산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장기대여금, 기타투자자산 등)
일반유형자산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등)
무형자산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등)
기타비유동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

나. 재정운영 분석

- ☐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사업) 전체의 원가인 재정운영 결과를 나타내기 위한 표로, 프로그램 순원가·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수익, 비교환수익 등을 포함하고 있음.
- ☐ 재정운영 결과는 프로그램총원가에서 프로그램 수익을 차감한 프로그램순원가에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합산하고, 비배분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를 계산한 후, 여기에 국세, 부담금 등 비교환수익을 차감한 것임.

[재정운영 결과 계산식]

-	프로그램 총원가 프로그램 수익	프로그램 수행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 있는 수익
	프로그램 순원가	
+	관리운영비	인건비 등 프로그램 수행을 지원하는 비용
+	비배분비용	프로그램에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비용
-	비배분수익	과오지급금 회수금 등 프로그램에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수익
	재정운영 순원가	
-	비교환수익	국세, 부담금 등
	재정운영 결과	(프로그램 전체의 원가)

- ☐ 2023년도 행정안전부의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 72조 4,148억 3,400만원 및 관리운영비 4,264억 6,000만원, 비배분비용 13억 6,100만원을 합산하고, 비배분수익 1,327억 8,500만원을 차감한 72조 7,098억 7,100만원이며, 비교환수익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와 동일한 72조 7,098억 7,100만원임.

[2023년도 행정안전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A)	2022(B)	증감	
			증감액(C=A-B)	증감율(C/B)
I. 프로그램순원가	72,414,834	86,611,233	-14,196,399	-16.4
II. 관리운영비	426,460	424,335	2,125	0.5
III. 비배분비용	1,361	2,002	-641	-32.0
IV. 비배분수익	132,785	238,690	-105,905	-44.4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72,709,871	86,798,880	-14,089,009	-16.2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VI)	72,709,871	86,798,880	-14,089,009	-16.2

※ 2023(A)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022(B)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 순자산변동 분석

☐ 순자산 변동표는 순자산의 변동내역을 표시하는데, 기초순자산에서 재정운영결과를 차감하고 재원의 조달·이전 및 조정항목을 합산한 결과를 기말순자산으로 표시함.

[기말순자산 계산식]

-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전기 既 보고된 순자산 금액에 오류 등을 반영하여 조정한 것 재정운영표상 사업원가
+	재원의조달	국세·부담금 등 비교환수익, 국고수입
+	재원의이전	중앙관서간의 무상이전거래, 국고이전지출
+	조정항목	순자산의 증가·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 중 납입자본의 증감, 투자증권 평가손익 등 재원의 조달·이전 비해당 거래
	기말순자산	

□ 행정안전부의 순자산은 2023년 말 기준 12조 22억 3,200만원이며, 2023년 기초순자산은 11조 7,295억 8,800만원, 재정운영결과는 72조 7,098억 7,100만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73조 346억 5,300만원, 조정항목은 - 521억 3,800만원임.

[2023년도 행정안전부 순자산변동표(일반회계+특별회계) 요약]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A)	2022(B)	증감	
			증감액(C=A-B)	증감율(C/B)
I. 기초순자산	11,729,588	11,341,417	388,171	3.4
II. 재정운영결과	72,709,871	86,798,880	-14,089,009	-16.2
III. 재원의조달및이전	73,034,653	86,945,293	-13,910,640	-16.0
IV. 조정항목	-52,138	241,757	-293,895	-121.6
V.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12,002,232	11,729,588	272,644	2.3

※ 2023(A)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022(B)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 성인지 결산

- 행정안전부 성인지사업은 여성 지방공무원의 대표성 제고, 여성의 사회진출 및 경제활동 지원, 재난상황에 여성의 대응역량 강화를 목표로 5개 세부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세출예산현액은 134억 3,500만원이고 집행액은 132억 4,100만원으로 집행률은 98.6%임.

[2023년도 행정안전부 성인지사업 예산집행결과]

(단위: 백만원, %)

회 계	세부사업명	2023년			2022년 지출액 (c)	전년 대비 증감 (d=b-c)	전년 대비 증감률 (d/c)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일반회계소계(A)		4,418	4,224	95.6	3,185	1,039	32.6
일반 회 계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수입 대체경비						
	- 여성리더양성·심화 과정운영 ¹⁾²⁾	577	577	100.0	-	577	-
	(2)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²⁾	478	452	94.6	-	452	-
	(3) 재난관리전문인력 양성	2,875	2,839	98.7	2,853	△14	△0.5
	(4) 사회재난교육훈련 및 역량지원강화 ²⁾	488	356	73.0	332	25	7.4
특별회계소계(B)		9,017	9,017	100.0	3,395	5,622	165.6
지 역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5) 지역사회 활성화 기 반조성						
	- 지역사회 활성화 공 간조성 ²⁾	9,017	9,017	100.0	3,395	5,622	165.6
성별영향평가사업소계		10,560	10,402	98.5	3,727	6,676	179.1
직접목적사업소계		577	577	100.0	-	577	-
합계(A+B)		13,435	13,241	98.6	6,580	6,661	101.2

1) 직접목적 사업

2) 성별영향평가 사업

6.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 ☐ 20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에는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음.

7. 지방교부세 결산

- ☐ 지방교부세란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1호¹⁾상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전으로서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지방정부간 재정력 편차를 보전해주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일환임. 같은 법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됨.

[지방교부세의 구분]

(단위: 백만원, %)

구분		목적	재원
보통교부세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내국세 정률분 ^{주)} 의 97%
특별교부세	지역현안	지연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 대응	내국세 정률분의 3% × 40%
	국가지방협력	국가적 장려사업 및 국가·지방 협력사업 촉진	내국세 정률분의 3% × 50%
	재난안전관리	재난복구 및 안전관리 수요 대응	내국세 정률분의 3% × 10%
부동산교부세		지방세(종합토지세)를 국세(종합부동산세)로 전환한 후의 지방재원 감소 보전	종합부동산세의 100%
소방안전교부세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 관리 강화 및 시설 확충 수요 대응	담배개별소비세의 45%

주) 내국세 정률분: 내국세에서 담배개별소비세 45% 및 종합부동산세·목적세를 제외한 것의 19.24%
자료: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교부세 산정 해설」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1) 「지방교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부세”란 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제6조, 제9조,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 2023회계연도 지방교부세는 총 75조 2,882억 6,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89.1%인 67조 1,194억 1,400만원이 교부(집행)되었음. 이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국세수입에 결손이 발생하여 그에 연동된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가 각각 예산대비 89.2%(예산 66조 6,445억 5,200만원 중 59조 4,757억원), 82.5%(5조 7,133억원 중 4조 7,133억원)만 교부되었기 때문임.²⁾

[2023회계연도 지방교부세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보통교부세(1631-300)		66,644,552	59,475,700	-	7,168,852	89.2
특별 교부 세	지역현안특별교부세 (1632-300)	824,469	824,469	-	-	100.0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1632-301)	206,117	206,117	-	-	100.0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644-300)	1,030,586	1,030,586	-	-	100.0
부동산교부세(1633-300)		5,713,300	4,713,300	-	1,000,000	82.5
소방안전교부세(1645-300)		869,242	869,242	-	-	100.0
합계		75,288,266	67,119,414	-	8,168,852	89.1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나머지 금액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차년도 또는 차차년도에 정산함.

「지방교부세법」

제5조(예산 계상) ③ 다음 각 호의 교부세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1.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2.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 이 중 보통교부세 미교부의 경우, 2013년 1조 130억 3,200만원(예산 대비 2.9%)이 미교부된 후 10년만에 다시 발생한 것임.

[2013~2023년 보통교부세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교부액	미교부액	교부율
2013	35,535,947	34,522,915	1,013,032	97.1
2014	35,698,180	35,698,180	0	100.0
2015	32,926,185	32,926,185	0	100.0
2016	35,023,661	35,023,661	0	100.0
2017	39,222,628	39,222,628	0	100.0
2018	42,469,616	42,469,616	0	100.0
2019	47,602,635	47,602,635	0	100.0
2020	44,896,524	44,896,524	0	100.0
2021	50,252,142	50,252,142	0	100.0
2022	65,517,054	65,517,054	0	100.0
2023	66,644,552	59,475,700	7,168,852	89.2

주) 2014년 이전에 모든 유형의 지방교부세를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 → 2013~2014년은 모든 지방교부세를 합산한 수치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부동산교부세 미교부의 경우, 2022년에도 2조 691억 4,800만원(예산 대비 24.0%)이 미교부되어 2년 연속으로 발생한 것임.

[2012~2023년 부동산교부세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교부액	미교부액	교부율
2022	8,620,400	6,551,252	2,069,148	76.0
2023	5,713,300	4,713,300	1,000,000	82.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참고로, 보통교부세 미교부가 발생한 2013년 및 2023년 국세수입은 예산액 대비 각각 96.0%, 85.9%만 수납되는 결손이 발생하였음.

[2013~2023년 국세수입 결산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예산액	수납액	수납율
2013	210.4	201.9	96.0
2014	216.5	205.5	94.9
2015	215.7	217.9	101.0
2016	232.7	242.6	104.2
2017	251.1	265.4	105.7
2018	268.1	293.6	109.5
2019	294.8	293.5	99.5
2020	279.7	285.5	102.1
2021	314.3	344.1	109.5
2022	396.6	395.9	99.8
2023	400.5	344.1	85.9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또한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인 종합부동산세도 2022~2023년 수입이 예산액 대비 각각 78.9%, 80.5%만 수납되는 결손이 발생하였음.

[2022~2023년 종합부동산세 결산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예산액	수납액	수납율
2022	8.6	6.8	78.9
2023	5.7	4.6	80.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1) 총괄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8억 6,300만원으로, 21억 8,0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40.0%인 8억 7,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2억 9,3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개요]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합계	863	2,180	871	100.9	40.0	1,293
재산수입	33	36	37	112.1	102.8	-
경상이전수입	822	1,904	594	72.3	31.2	1,29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8	29	29	362.5	100.0	-
관유물매각대	-	212	212	-	100.0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세입 주요내역

- 2023회계연도 세입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토지대여료 등 “재산수입” 3,700만원, 과태료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경상이전수입” 5억 9,400만원, 잡수입인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900만원, 토지매각대인 “관유물매각대” 2억 1,2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세입 주요 증감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과부족 (B-A)	세 부 내 역
합 계		863	2,180	871	8	
○	재산수입	33	37	37	4	
	▪ 토지대여료	23	26	26	3	국유재산 허가 사용료
	▪ 기타관유물대여료	5	3	3	△2	임차 관사 등 허가 사용료
	▪ 기타재산이자수입	5	7	7	2	금융기관 예치이자액 등
○	경상이전수입	822	1,904	594	△228	
	▪ 과 태 료	110	165	110	-	공직선거법 등 위반 과태료
	▪ 변 상 금	2	3	3	1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 위 약 금	-	5	5	5	계약불이행 위약금 등
	▪ 가 산 금	-	2	1	1	공직선거법 등 위반 과태료 채납에 따른 가산금
	▪ 기타경상이전수입	710	1,729	476	△234	후보자 기탁금, 선거보전비용반환금 등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8	29	29	21	
	▪ 기타잡수익	8	29	29	21	폐기문서 등 불용품 매각대
○	관유물매각대	-	212	212	212	
	▪ 토지매각대	-	212	212	212	청사신축부지 교환에 따른 차액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분 석

- 2023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세입결산액은 8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결산액 66억 7,900만원 대비 87.0.% 감소하였음. 이는 공직선거 후보자 기탁금 국고귀속액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전년도 대비 세입결산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C/A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2023년	863	2,180	871	101.0	40.0	1,293	16
2022년	4,035	8,099	6,679	165.5	82.5	1,347	74
증감율	△78.6	△73.1	△87.0	-	-	△4.0	△78.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23년도에는 세입예산액 8억 6,300만원의 101.0%인 8억 7,100만원을 징수하여 세입예산을 초과하였음.

□ 한편, 최근 5년간 세입예산 대비 징수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2021년에는 징수액이 예산액에 미달하였고, 기타연도에는 징수액이 예산액을 초과함.

[최근 5년간 세입예산 징수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과부족 (C-A)	징수율 (C/A)
2019년	838	892	886	48	105.7
2020년	10,465	12,347	12,215	1,750	116.7
2021년	1,537	2,812	1,145	△392	74.5
2022년	4,035	8,099	6,679	2,644	165.5
2023년	863	2,180	871	8	101.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이처럼 징수율 변동 차가 큰 데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단위 공직선거의 실시 여부 및 후보자수 등에 따라 연도별 세입액 편차가 크고, 기탁금 국고귀속액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금 등 기타 경상이전수입 및 과태료는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나. 세출결산

(1) 총괄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추경포함)은 4,067억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1억 2,2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4,068억 2,2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8.3%인 3,999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의 1.7%인 68억 5,5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결산	2023년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액
		본예산	추경		
총계	839,892	406,700	406,700	406,822	399,967
<1100선거의공정한관리계>	565,466	116,896	116,896	116,896	113,247
<1131공직선거관리계>	405,658	49,477	49,477	49,477	47,964
• 대통령선거관리(1131-300)	285,954	-	-	-	-
• 국회의원선거관리(1131-301)	23	3,800	3,800	3,567	2,932
•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1131-302)	13,536	-	-	-	-

구 분	2022 결산	2023년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액
		본예산	추경		
• 재보궐선거관리(1131-303)	5,350	1,394	1,394	1,627	1,597
• 재외선거관리(1131-305)	6,561	7,707	7,707	7,707	7,451
• 위탁선거관리(1131-306)	199	501	501	501	488
• 선거보전금(1131-307)	91,703	-	-	-	-
• 선거장비및물품관리(1131-309)	2,331	36,075	36,075	36,075	35,496
<1132정당발전지원계>	142,255	47,973	47,973	47,973	47,843
• 정당사무지원(1132-320)	240	239	239	239	214
• 정당보조금(1132-322)	142,015	47,734	47,734	47,734	47,629
<1133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계>	16,739	18,556	18,556	18,556	16,575
• 민주시민의식함양및지원(1133-330)	1,822	2,414	2,414	2,414	1,484
• 교육및연구기반조성(1133-331)	1,404	1,474	1,474	1,474	1,391
• 공명선거기반조성(1133-332)	2,741	2,254	2,254	2,254	2,120
• 위법행위예방활동(1133-333)	10,215	12,002	12,002	12,002	11,318
•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1133-334)	556	412	412	412	262
<1135선거관리지원계>	814	890	890	890	865
• 인터넷심의기반조성(1135-313)	106	116	116	116	115
• 선거방송토론(1135-314)	459	474	474	474	460
• 선거여론조사심의(1135-315)	249	300	300	300	290
<7100선거관리행정지원계>	274,427	289,804	289,804	289,926	286,721
<7101인건비계>	208,315	216,626	216,626	212,954	211,801
• 인건비(7101-150)	208,315	216,626	216,626	212,954	211,801
<7111기본경비계>	14,448	16,298	16,298	16,298	15,599
• 위원회기본경비(7111-250)	14,448	16,298	16,298	16,298	15,599
<7132기관운영지원계>	44,169	49,779	49,779	53,573	52,489
• 법제지원및법규운용(7132-310)	420	497	497	497	485
• 선거관리역량강화(7132-340)	695	803	803	803	760
• 시험관리및전문성강화(7132-343)	497	539	539	539	524
•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7132-344)	2,112	2,311	2,311	2,311	2,274
• 국제교류협력(7132-345)	1,082	1,045	1,045	1,045	963
• 감사활동및공직윤리확립(7132-347)	139	180	180	180	177
• 차량및물품관리(7132-349)	1,438	1,545	1,545	1,545	1,519
• 전산운영경비(정보화)(7132-350)	12,699	13,957	13,957	16,614	16,483
• 위원회운영(7132-351)	1,721	2,257	2,257	2,257	2,219
• 선거연수원운영(7132-352)	1,944	2,106	2,106	2,106	2,036
• 청사관리(7132-354)	21,424	24,539	24,539	25,676	25,049
<7136선거행정정보화계>	7,260	6,841	6,841	6,841	6,768
• 온라인투표기반조성(정보화)(7136-500)	482	568	568	568	555
• 선거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7136-523)	6,778	6,273	6,273	6,273	6,213
<7137예비금계>	235	260	260	260	64
• 예비금(7137-430)	235	260	260	260	64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이·전용 등

(가) 이·전용

☐ 2023회계연도 이·전용액은 없음.

☐ 2023회계연도 전용액은 전체 예산액의 0.9%인 36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전용액 769억 6,500만원 대비 95.2% 감소하였음. 주요 내역은 보안 컨설팅 후속 조치에 따른 전산장비 등 구입비 부족액 26억 5,700만원, 청사 공공요금 부족액 10억 1,500만원, 국선 재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유권자 의식조사 부족액 1백만원임.

[2023회계연도 이·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예산액(A)	예산현액(B)	이·전용(C)	C/A
합 계	406,700	406,822	3,673	0.9
1100 선거의공정한관리	116,896	116,896	1	0.001
7100 선거관리행정지원	289,804	289,926	3,672	1.27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3회계연도 이·전용 증감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감율
이 용	-	4,384	△4,384	순감
전 용	3,673	76,965	△73,292	△95.2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이 월

- 2023회계연도 이월액은 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2,100만원 감소하였음. 이는 12월 카드사용분에 대한 대금 미청구로 인한 미지급금임.

[2023회계연도 이월내역]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예산액(A)	예산현액(B)	이월액(C)	C/A
합 계	116,896	116,896	1	0.001
7100 선거관리행정지원	116,896	116,896	1	0.001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3회계연도 이월 증감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감율
이 월	1	122	△121	△99.9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불 용

- 2023회계연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7% 수준인 68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306억 6,500만원 대비 77.6% 감소하였음. 불용내역은 단위사업별로 공직선거관리 15억 1,300만원, 정당발전지원 1억 3,000만원,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19억 8,100만원, 선거관리지원 2,500만원, 인건비 11억 5,300만원, 기본경비 6억 9,900만원, 기관운영 지원 10억 8,400만원, 선거행정정보화 7,300만원, 예비금 1억 9,600만원임.

[2023회계연도 불용내역]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예산액(A)	예산현액(B)	불용액(C)	C/A
합 계	406,700	406,822	6,855	1.7
1100 선거의공정한관리	116,896	116,896	3,649	3.1
7100 선거관리행정지원	289,804	289,926	3,205	1.1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3회계연도 불용 증감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감율
불 용	6,855	30,665	△23,810	△77.6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라) 예비금

- 2023회계연도 예비금 예산액은 2억 6,000만원으로, 6,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9,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사용내역으로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비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재해보상금임.

[2023회계연도 예비금 지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예비금	260	64	-	196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분 석

(가) 세출결산 전반

-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액(추경포함)은 4,067억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억 2,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068억 2,200만원임. 이 중 98.3%인 3,999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0.001%인 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7%인 68억 5,5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A)	전년 이월	예비비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C)			이월액(D)		불용액(E)	
					금액	(C/A)	(C/B)	금액	(D/B)	금액	(E/B)
406,700	122	-	±3,673	406,822	399,967	98.3	98.3	1	0.001	6,855	1.7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출예산은 전국단위 공직선거 미실시에 따라 선거관리 비용 등 주요 사업비가 감소하였으며, 2023회계연도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공직선거관리 479억 6,400만원, 정당발전지원 478억 4,300만원,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165억 7,500만원, 선거관리지원 8억 6,500만원, 인건비 2,118억 100만원, 기본경비 155억 9,900만원, 기관운영지원 524억 8,900만원, 선거행정정보화 67억 6,800만원, 예비금 6,400만원임.

[최근 5년간 세출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집행액(C)			이월액	불용액
			금액	(C/A)	(C/B)		
2019년	343,572	348,037	328,719	95.7	94.4	166	19,152
2020년	725,084	742,820	710,729	98.0	95.7	33	32,059
2021년	385,228	385,261	359,938	93.4	93.4	64	25,259
2022년	870,615	870,679	839,892	96.5	96.5	122	30,665
2023년	406,700	406,822	399,967	98.3	98.3	1	6,855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23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산 분석 결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세출예산 집행액은 전년대비 52.4% 감소한 3,999억 6,700만원으로 이는 임기만료에 의한 전국단위 공직선거 미실시로 선거관리경비 및 선거보조금 등 세출예산액 자체가 감소함에 따라 집행액도 감소하였기 때문임.
- 둘째, 이용액은 전년대비 100.0% 감소하였으며, 전용액은 36억 7,300만원으로 전년대비 95.2% 감소하였음.

(나) 이 · 전용

☐ 2023회계연도 이용액은 없음

☐ 전용액은 36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전용액 769억 6,500만원 대비 95.2% 감소하였음. 전용내역은 보안컨설팅 후속 조치에 따른 전산장비 등 구입비 부족액 26억 5,700만원, 청사 공공요금 부족액 10억 1,500만원, 국선 재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유권자 의식조사 부족액 1백만원임.

[2023회계연도 이 ·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감율
이 용	-	4,384	△4,384	순감
전 용	3,673	76,965	△73,292	△95.2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최근 5년간 예산액에 대한 이·전용액의 비율을 보면 2022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1.0% 미만이며, 2022년도 이·전용액 증가 사유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비 등 부족, 국선 재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관리경비 등 부족, 청년추천보조금 신설에 따른 지급 재원 등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이·전용액 비율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예 산 액	343,572	725,084	385,228	870,615	406,700
이·전용액	687	7,082	257	81,349	3,673
예산액 대비 이·전용액 비율	0.2	0.98	0.07	9.3	0.9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근 5년간 이·전용액 및 사유]

(단위: 백만원)

연 도	이·전용 사유	이·전용액
2019년	계	687
	▪ 각급 위원회 공공요금 부족	390
	▪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연금 부족	237
	▪ 사회복지무요원 여비 부족	23
	▪ 행정지원인력 고용부담금 부족	23
	▪ 보궐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연구용역비 부족	10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준비경비 부족	5
2020년	계	7,082
	▪ 코로나19 대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방역물품 구입	5,000
	▪ 공정선거지원단 고용부담금 부족	84
	▪ 선거공보 발송 등 우편요금 부족	1,915
	▪ 사회복지무요원 여비 부족	52
	▪ 대체청사 담장붕괴에 따른 차량피해 손실보상금 소요	20
	▪ 선거전용통신망 사업비 분석 용역 관련 부족	11

연 도	이 · 전용 사유	이 · 전용액
2021년	계	257
	▪ 보궐선거 사전투표사무원 낙상사고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	1
	▪ 공공요금 부족	207
	▪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 부족	11
	▪ 유권자의식조사 연구용역비 부족액	11
	▪ 사회복지무요원 여비 부족액	11
	▪ 장애인 (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 수당 · 실비	7
	▪ 재외선거관리시스템 인식개선프로그램 개발비 부족	6
	▪ 국가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비 부족	3
2022년	계	81,349
	▪ 제20 대통령선거 투표시간 연장 관련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등 부족(이용 4,384, 전용 50,182)	54,566
	▪ 코로나19 예방·대책비용 전용에 따른 선거보전금 부족액	17,400
	▪ 국선 재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관리경비 및 보전금 부족	4,940
	▪ 청년추천보조금 지급 재원 부족	4,400
	▪ 유상임차청사 임차료 부족	28
	▪ 기타직보수 부족	15
2023년	계	3,673
	▪ 보안컨설팅 후속 조치에 따른 전산장비 등 구입 비용	2,657
	▪ 4분기 기관운영비(공공요금및제세) 부족액	1,015
	▪ 국선 재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유권자 의식조사 비용	1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이 월

□ 2023회계연도 이월액은 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2,100만원 감소하였음.

[2023년도 이월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감율
이 월	1	122	△121	△99.9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최근 5년간 예산액에 대한 이월액의 비율을 보면, 2019년도에는 0.05%, 2020년도에는 0.004%, 2021년도에는 0.06%, 2022년도에는 0.01% 2023년도에는 0.001% 수준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음.

[최근 5년간 이월액 비율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예 산 액	343,572	725,084	385,228	870,615	406,700
이 월 액	166	33	64	122	1
예산액 대비 이월액 비율	0.05	0.004	0.06	0.01	0.001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근 5년간 이월액 및 사유]

(단위: 백만원)

연 도	이월사유	이월액
2019년	계	166
	▪ 향온항습기 구매설치 계약지연	166
2020년	계	33
	▪ 선거물품 집중보관용역 대금 미지급금	26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보전유예금	7
2021년	계	64
	▪ 코로나19로 인하여 생산 차질이 발생하여 선거장비 지원센터 운반장비(지게차 및 핸드파레트) 납품 지연에 따른 대금 미지급금	64
2022년	계	122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레미콘 공급 차질 등 납품 지연에 따라 발생한 공기연장에 대한 미지급금	122
2023년	계	1
	▪ 12월 카드사용분 대금 미청구로 인한 미지급금	1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라) 불 용

- 2023회계연도 불용액은 68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306억 6,500만원 대비 77.6% 감소하였음. 불용내역은 주로 집행잔액이며 불용내역은 단위사업별로 공직선거관리 15억 1,300만원, 정당발전지원 1억 3,000만원,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19억 8,100만원, 선거관리지원 2,500만원, 인건비 11억 5,300만원, 기본경비 6억 9,900만원, 기관운영지원 10억 8,400만원, 선거행정정보화 7,300만원, 예비금 1억 9,600만원임.

[2023년도 불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감율
불 용	6,855	30,665	△23,810	△77.6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최근 5년간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2019년도 이후 5.0% 내외의 수준으로 발생하였으나, 2022년도 이후는 불용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불용액 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 산 액	343,572	725,084	385,228	870,615	406,700
불 용 액	19,152	32,059	25,259	30,665	6,855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	5.6	4.4	6.6	3.5	1.7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근 5년간 불용액 및 불용사유]

(단위: 백만원)

연 도	불용사유	불용액
2018년	계	28,552
	▪ 인건비 집행잔액	19,553
	▪ ODA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1,277
	▪ 정당보조금 집행잔액	758
	▪ 재보궐선거 선거보전금 집행잔액	596
	▪ 267개 각급 위원회 집행잔액	6,368
2019년	계	19,152
	▪ 인건비 집행잔액	16,936
	▪ 위법행위예방활동 집행잔액	353
	▪ 재외선거관리 집행잔액	227
	▪ 재보궐선거관리 집행잔액	225
	▪ 기타 267개 위원회 집행잔액	1,411
2020년	계	32,059
	▪ 기타 267개 위원회 집행잔액	12,240
	▪ 선거보전금 집행잔액	12,046
	▪ 인건비 집행잔액	4,035
	▪ 재외선거관리 집행잔액	2,233
	▪ 위법행위예방활동 집행잔액	1,505
2021년	계	25,259
	▪ 인건비 집행잔액	13,694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사업 규모 축소·미 실시	7,615
	▪ 기타 267개 위원회 집행잔액	3,950
2022년	계	30,665
	▪ 정당보조금 집행잔액	5,624
	▪ 인건비 집행잔액	3,706
	▪ 선거보전금 집행잔액	2,275
	▪ 기타 267개 위원회 집행잔액	19,060
2023년	계	6,855
	▪ 인건비 집행잔액	1,153
	▪ 기타 269개 위원회 집행잔액	5,702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프로그램

(가) 선거의공정한관리 프로그램(110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은 “선거의공정한관리(1100)” 및 “선거관리행정지원(7100)”의 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선거의공정한관리(1100)” 프로그램은 최적의 선거관리기반 구축 및 수요자 중심의 선거서비스 제공을 통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아래 표와 같이 i) 공직선거관리(1131), ii) 정당발전지원(1132), iii)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1133), iv) 선거관리지원(1135)의 4개 단위사업과 1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회계연도 선거의 공정한 관리 프로그램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결산	2023년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액
		본예산	추경		
<1131공직선거관리계>	405,658	49,477	49,477	49,477	47,964
• 대통령선거관리(1131-300)	285,954	-	-	-	-
• 국회의원선거관리(1131-301)	23	3,800	3,800	3,567	2,932
•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1131-302)	13,536	-	-	-	-
• 재보궐선거관리(1131-303)	5,350	1,394	1,394	1,627	1,597
• 재외선거관리(1131-305)	6,561	7,707	7,707	7,707	7,451
• 위탁선거관리(1131-306)	199	501	501	501	488
• 선거보전금(1131-307)	91,703	-	-	-	-
• 선거장비및물품관리(1131-309)	2,331	36,075	36,075	36,075	35,496
<1132정당발전지원계>	142,255	47,973	47,973	47,973	47,843
• 정당사무지원(1132-320)	240	239	239	239	214
• 정당보조금(1132-322)	142,015	47,734	47,734	47,734	47,629

구 분	2022 결산	2023년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액
		본예산	추경		
<1133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계>	16,739	18,556	18,556	18,556	16,575
• 민주시민의식함양및지원(1133-330)	1,822	2,414	2,414	2,414	1,484
• 교육및연구기반조성(1133-331)	1,404	1,474	1,474	1,474	1,391
• 공명선거기반조성(1133-332)	2,741	2,254	2,254	2,254	2,120
• 위법행위예방활동(1133-333)	10,215	12,002	12,002	12,002	11,318
•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1133-334)	556	412	412	412	262
<1135선거관리지원계>	814	890	890	890	865
• 인터넷심의기반조성(1135-313)	106	116	116	116	115
• 선거방송토론(1135-314)	459	474	474	474	460
• 선거여론조사심의(1135-315)	249	300	300	300	29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선거관리행정지원 프로그램(7100)

□ “선거관리행정지원(7100)” 프로그램은 선거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무공간 확보 및 기본경비 지원, 선거정보시스템 고도화로 효율적·민주적 선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아래 표와 같이, i) 인건비(7101), ii) 기본경비(7111), iii) 기관운영지원(7132), iv) 선거행정정보화(7136), v) 예비금(7137)의 5개의 단위사업과 1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2023회계연도 선거관리행정지원 프로그램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결산	2023년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액
		본예산	추경		
<7101인건비계>	208,315	216,626	216,626	212,954	211,801
• 인건비(7101-150)	208,315	216,626	216,626	212,954	211,801
<7111기본경비계>	14,448	16,298	16,298	16,298	15,599

구 분	2022 결산	2023년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액
		본예산	추경		
• 위원회기본경비(7111-250)	14,448	16,298	16,298	16,298	15,599
<7132기관운영지원계>	44,169	49,779	49,779	53,573	52,489
• 법제지원및법규운용(7132-310)	420	497	497	497	485
• 선거관리역량강화(7132-340)	695	803	803	803	760
• 시험관리및전문성강화(7132-343)	497	539	539	539	524
•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7132-344)	2,112	2,311	2,311	2,311	2,274
• 국제교류협력(7132-345)	1,082	1,045	1,045	1,045	963
• 감사활동및공직윤리확립(7132-347)	139	180	180	180	177
• 차량및물품관리(7132-349)	1,438	1,545	1,545	1,545	1,519
• 전산운영경비(정보화)(7132-350)	12,699	13,957	13,957	16,614	16,483
• 위원회운영(7132-351)	1,721	2,257	2,257	2,257	2,219
• 선거연수원운영(7132-352)	1,944	2,106	2,106	2,106	2,036
• 청사관리(7132-354)	21,424	24,539	24,539	25,676	25,049
<7136선거행정정보화계>	7,260	6,841	6,841	6,841	6,768
• 온라인투표기반조성(정보화)(7136-500)	482	568	568	568	555
• 선거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7136-523)	6,778	6,273	6,273	6,273	6,213
<7137예비금계>	235	260	260	260	64
• 예비금(7137-430)	235	260	260	260	64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재무결산

가. 재정상태 분석

□ 자산은 7,524억 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하였음. 유동 자산은 32억 600만원으로 전년대비 51.7% 감소하였으며, 이는 지급보증금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투자자산은 전년대비 1,200만원 80.0%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타투자자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일반유형자산은 7,280억 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하였으며,

이는 토지·건물의 취득 및 정부내자산수증, 구축물·기계장치·집기·비품·차량운반구에 대한 취득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무형자산은 93억 3,60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0.3% 증가하였으며, 이는 외부소프트웨어의 구입과 시스템구축 등 내부개발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출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기타비유동자산은 118억 3,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2.3% 증가하였으며, 이는 장기지급보증금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부채는 95억 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2% 감소하였음. 유동부채는 34억 9,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 감소하였으며, 이는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리스부채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장기차입부채는 60억 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6% 감소하였으며, 이 역시 1년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리스부채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 순자산은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7,429억 5,100만원이며 전년대비 5.9%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재정상태 개요]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A)	2022(B)	증 감 (A-B)	
			금 액	비 율
자 산	752,452	714,543	37,909	5.3
부 채	9,501	13,048	△3,547	△27.2
순자산	742,951	701,495	41,456	5.9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재정운영 분석

□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4,142억 6,900만원이며 전년대비 52.8% 감소함. 프로그램순원가는 선거의공정한관리 프로그램으로 888억 5,100만원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84.5%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국단위 공직선거 미실시에 따른 경비의 감소에 기인함. 관리운영비는 3,263억 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하였으며, 이는 경비 증가에 따른 것임. 비배분수익은 10억원으로 전년대비 84.9% 감소하였으며, 이는 기타수익 감소에 기인한 것임.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 개요]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A)	2022(B)	증 감 (A-B)	
			금 액	비 율
I. 프로그램순원가	88,851	572,098	△483,247	△84.5
II. 관리운영비	326,399	312,323	14,076	4.5
III. 비배분비용	18	23	△5	△21.7
IV. 비배분수익	1,000	6,616	△5,616	△84.9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414,269	877,828	△463,559	△52.8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414,269	877,828	△463,559	△52.8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순자산변동 분석

- 기말순자산액 7,429억 5,100만원은 기초순자산액 7,014억 9,500만원에서 재정운영결과인 4,142억 6,900만원을 차감하고, 재원의조달및이전액 4,562억 500만원과 조정항목 △4억 800만원을 더한 값임.

[2023회계연도 순자산변동 개요]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A)	2022(B)	증 감 (A-B)	
			금 액	비 율
I. 기초순자산	701,495	681,212	20,283	3.0
II. 재정운영결과	414,269	877,828	△ 463,559	△ 52.8
III. 재원의조달및이전	456,205	889,526	△ 433,321	△ 48.7
IV. 조정항목	△ 480	8,584	△ 9,064	△ 105.6
V.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742,951	701,495	41,456	5.9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주요 순자산변동내역 및 금액은 다음과 같음.

[2023년 주요순자산 변동내역 및 금액]

- 기초순자산	701,495백만원
- 재정운영결과	414,269백만원
- 재원의 조달	459,430백만원
• 국고수입	399,968백만원
• 제재금수익	123백만원
• 기타비교환수익	279백만원
• 무상이전수입	7,451백만원
• 기타재원조달	51,610백만원
- 재원의 이전	3,225백만원
• 국고이전지출	871백만원
• 무상이전지출	2,354백만원
- 조정항목	△ 480백만원
• 자산재평가이익	△ 480백만원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성인지 결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성인지 사업은 공공부분 여성 대표성 제고 목표로 1개 세부사업이 있으며, 총 세출예산현액은 1억 6,800만원이고 집행액은 6,800만원으로 집행률은 40.4%임.

[2023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성인지 사업 예산집행결과]

(단위: 백만원, %)

회계	세부사업명	'22년	'23년 집행액(c)			전년 대비 증감 (b-c)	전년 대비 증감률 (b-c/c)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일반회계 소계(A)	43	168	68	40.4	25	57.9
일반 회계	(1) 민주시민의식함양및지원						
	- 여성 정치참여 교육	43	168	68	40.4	25	57.9
	특별회계 소계(B)	-	-	-			
	성평등추진중점사업 소계	-	-	-			
	직접목적사업 소계	43	168	68	40.4	25	57.9
	합 계(A+B)	43	168	68	40.4	25	57.9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1. 일반회계

가. 세 입

- ☐ 2023회계연도 진실화해위원회 일반회계에 세입예산은 계상하지 않았으며, 3,000만원³⁾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함.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 수 결정액(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일반회계	-	30	30	0	0	100.0
합 계	-	30	30	0	0	100.0

나. 세 출

(1) 총 괄

- ☐ 2023회계연도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었음. 세출예산현액은 193억 5,000만원이었고, 예산현액 대비 85%인 164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8,100만원, 불용액은 16억 1,400만원임.

3)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및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등 29,527,940원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비비	전년도 이월액	이체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 음 연 도 이월액	불용액 (C)	B/A (%)	C/A (%)
본예산	추경										
19,077	19,077	-	273	-	±480	19,350	16,456	1,281	1,614	85.0	8.3

- 동 세출예산은 ‘진실화해위원회 운영’과 ‘진실화해위원회 행정지원’ 2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고, 진실화해위원회 운영 프로그램에는 진화위운영 단위사업(진화위운영 세부사업 1개)이, 진실화해위원회 행정지원 프로그램에는 진화위인건비 단위사업(세부사업 1개) 및 진화위기본경비 단위사업(세부사업 1개)이 각각 편성되었음.

[2023회계연도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예산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총 계	19,077	19,077	273	±480	19,350	16,456	85	16,749
1000 진실화해위원회 운 영 계	7,029	7,029	273	-	7,302	4,528	64.4	3,429
1031 진 화 위 운영	7,029	7,029	273	-	7,302	4,528	64.4	3,429
진 화 위 운영 (1031-300)	7,029	7,029	273	-	7,302	4,528	64.4	3,429
7000 진실화해위원회 행 정 지 원 계	12,048	12,048	-	±480	12,048	11,928	99.0	13,320
7001 진 화 위 인 건 비	6,094	6,094	-	480	6,574	6,537	107.3	6,520
진 화 위 인 건 비 (7001-150)	6,094	6,094	-	480	6,574	6,537	107.3	6,520
7002 진 화 위 기 본 경 비	5,954	5,954	-	△ 480	5,474	5,391	90.5	6,800
진 화 위 기 본 경 비 (7002-250)	5,954	5,954	-	△ 480	5,474	5,391	90.5	6,800

(2) 이·전용

□ 진실화해위원회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추가 소요⁴⁾가 발생하여 4억 8,000만 원을 전용⁵⁾함.

4) 진실화해위원회 공무원(별정직, 전문임기제) 경력 반영 등에 따라 직급별 연봉 및 호봉의 평균단가 차이가 발생하여 보수 실지금액이 증가하게 되었음.

5) 진실화해위원회 행정지원 프로그램 내 진화위기본경비 단위사업(진화위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부터 진화위인건비 단위사업(진화위인건비 세부사업)으로 4억 8,000만 원을 전용함.

(3) 이 월

- 2023회계연도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은 12억 8,100만원으로, 계약기간 미도래,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용역 계약 11건이 사고이월되어 발생하였음.
- 2023년 진실화해위원회 OTT특화 다큐멘터리 제작 용역의 경우 조달청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23.7.)하였으나 중간보고회 후 제작 기간 추가 필요에 따라 사업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음.
- 2023년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용역의 경우 발굴 대상지로 권고된 지역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전행정절차를 추진하고 각 지자체 토지사용 승낙을 7월 완료 후 조달청 경쟁입찰 실시, 제안서 평가 등 계약 체결('23.8.)이 지연되었으며, 2023년 민간인 희생자 발굴 유해·유가족의 유전자 검사 용역 역시 조달청 경쟁입찰 실시, 제안서 평가 등 계약 절차 지연으로 계약 체결('23.9.)이 지연되었음.
- 강제징집 및 녹화선도공작 피해자 증언채록 용역은 사업계획 수립 ('23.9.) 후 조달청 입찰을 통해 계약 체결을 추진하였으나 제안서 평가 등 절차가 지연되어 계약 체결이 '23.12월에 이루어지고 '24.1월에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서울시립 여성수용시설 입수자료 분석 용역의 경우에도 사업계획 수립 후('23.9.) 조달청 입찰을 추진하였으나 단독응찰로 유찰되어 '23.12월 수의계약으로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24.1월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음.

[이월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내 역
합 계	1,281	• 계약기간 미도래 및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인한 용역계약 11건 사고이월
진화위운영 (1031-300)	1,260	• 2023년 진실화해위원회 OTT특화 다류멘터리 제작 (81)
		• 3·15의거 위상 및 가치 재조명 연구 용역 (17)
		• 2023년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용역 (355)
		• 2023년 세종추모의집 보관 유해의 유전자 시료채취 용역 (117)
		• 2023년 민간인 희생자 발굴 유해·유가족의 유전자 검사 용역 (308)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부작업 및 특성 분석 (18)
		• 재일교포 북송사건 연구용역 (20)
		• 강제징집 및 녹화선도공작 피해자 증언채록 용역 (148)
		•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자 구술채록 용역 (146)
		• 서울시립 여성수용시설 입수자료 분석 용역 (50)
진화위기본경비 (7002-250)	21	• 화해모델 및 진실·화해재단 설립방안 연구

(4) 불 용

☐ 불용액은 16억 1,400만원으로 용역계약 체결 시 발생한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하였음.

2. 예비비 지출

☐ 2023회계연도 진실화해위원회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음.

3. 재무결산

☐ 진실화해위원회 재무결산은 일반회계 1개로 편성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음.

가. 재정상태 분석

☐ 2023회계연도 말 진실화해위원회의 자산은 42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35억 2,600만원보다 7억 6,600만원 증가하였음.

☐ 이는 임차보증금 만기연장에 따른 비유동 대체 등의 영향으로 유동자산이 4억 1,700만원 감소하고 감가상각 등으로 일반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 각각 3억 600만원 및 9,600만원 감소하였으나, 임차보증금 대체로 기타비유동자산이 15억 8,5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23회계연도 말 진실화해위원회의 부채는 1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5,400만원보다 5,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퇴직금 지급대상자 근속연수 증가 등으로 장기충당부채가 5,6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은 41억 8,200만원으로 전기 대비 7억 1,000만원 증가함.

[위원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A)	2022(B)	증 감 (A-B)	
			금 액	비율(%)
I. 자산(a)	4,292	3,526	766	21.7
· 유동자산	1,514	1,931	-417	-21.6
· 투자자산	-	-	-	-
· 일반유형자산	765	1,071	-306	-28.6
· 무형자산	428	523	-95	-18.2
· 기타비유동자산	1,585	-	1,585	-
II. 부채(b)	110	54	56	103.7
· 유동부채	-	-	-	-
· 장기차입부채	-	-	-	-
· 장기충당부채	110	54	56	103.7
·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a-b)	4,182	3,472	710	20.4

※ 2023(A) : 2023년 12월 31일자 잔액, 2022(B) : 2022년 12월 31일자 잔액

[자산 종류에 대한 설명]

자산의 종류	설 명
유동자산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채권 등)
투자자산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장기대여금, 기타투자자산 등)
일반유형자산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등)
무형자산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등)
기타비유동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

나. 재정운영 분석

-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사업) 전체의 원가인 재정운영 결과를 나타내기 위한 표로, 프로그램 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수익, 비교환수익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재정운영 결과는 프로그램총원가에서 프로그램 수익을 차감한 프로그램순원가에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합산하고, 비배분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를 계산한 후, 여기에 국세, 부담금 등 비교환수익을 차감한 것임.

[재정운영 결과 계산식]

-	프로그램 총원가 프로그램 수익	프로그램 수행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 있는 수익
	프로그램 순원가	
+	관리운영비	인건비 등 프로그램 수행을 지원하는 비용
+	비배분비용	프로그램에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비용
-	비배분수익	과오지급금 회수금 등 프로그램에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수익
	재정운영 순원가	
-	비교환수익	국세, 부담금 등
	재정운영 결과	(프로그램 전체의 원가)

- 2023년도 위원회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 35억 9,600만 원에 관리운영비 130억 4,900만 원을 합산하고 비배분수익 3,000만 원을 차감한 166억 1,500만원임.

□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 총원가가 자
 치단체보조비 및 연구개발용역비 등 증가로 전기대비 12억 7,300만
 원 증가하였고, 관리운영비는 프로그램 수행을 지원하는 인건비가
 전기대비 9억 500만원 증가하고 임차료 등 기타경비가 7억 3,600만
 원 증가하여 전기대비 16억 4,100만원 증가함. 비배분수익은 지출금
 반납금이 발생하여 전기대비 3,000만원 증가함.

[2023년도 위원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A)	2022(B)	증 감 (A-B)	
			금 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	3,596	2,323	1,273	54.8
가. 프로그램 총원가	3,596	2,323	1,273	54.8
나. 프로그램 수익	-	-	-	-
II. 관리운영비	13,049	11,408	1,641	14.4
III. 비배분비용	-	-	-	-
IV. 비배분수익	30	-	30	-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16,615	13,731	2,884	21.0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16,615	13,731	2,884	21.0

※ 2023(A)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022(B)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 순자산변동 분석

- 순자산 변동표는 순자산의 변동내역을 표시하는데, 기초순자산에서 재정운영결과를 차감하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 및 조정항목을 합산한 결과를 기말순자산으로 표시함.

[기말순자산 계산식]

-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전기 既 보고된 순자산 금액에 오류 등을 반영하여 조정한 것 재정운영표상 사업원가
+	재원의조달	국세·부담금 등 비교환수익, 국고수입
+	재원의이전	중앙관서간의 무상이전거래, 국고이전지출
+	조정항목	순자산의 증가·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 중 납입자본의 증감, 투자증권 평가손익 등 재원의 조달·이전 비해당 거래
	기말순자산	

- 위원회의 순자산은 2023년 말 기준 41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말 34억 7,200만원보다 7억 1,000만원 증가하였음.
- 구체적으로 재원의 조달은 174억 7,200만원으로 국고수입 31억 2,100만원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기대비 33억 1,500만원 증가하였고, 재원의 이전은 국고이전지출 및 정부내자산기부 증가로 전기대비 7,9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173억 2,500만원으로 전기대비 32억 3,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166억 1,500만원으로 전기대비 28억 8,400만원 증가하여 당기 기말 순자산은 41억 8,200만원임.

[위원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구분	2023(A)	2022(B)	증 감	
			금액(C=A-B)	비율(C/B)
I. 기초순자산	3,472	3,113	359	11.5
II. 재정부영결과	16,615	13,731	2,884	21.0
III. 재원의조달및이전	17,325	14,089	3,236	23.0
IV. 조정항목	-	-	-	-
V.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4,182	3,472	710	20.4

※ 2023(A)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022(B)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인사혁신처 소관】

1. 일반회계

가. 세 입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59억 6,200만원이며, 63억 8,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3억 600만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7,9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수납액은 예산현액에 비해 3억 4,400만원 많음.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과 목 별	예산현액 (A)	징 수 결정액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증 감 (B-A)
재 산 수 입	4	6	6	-	-	2
경상이전수입	748	1,326	1,247	-	79	499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423	967	967	-	-	△456
수입대체경비수입	3,787	4,087	4,087	-	-	300
합 계	5,962	6,385	6,306	-	79	344

나. 세 출

(1) 총 괄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 5조 1,170억 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600만원을 포함한 5조 1,170억 7,5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5조 1,112억 7,8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1%인 57억 9,8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프로그램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 용	이 용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 음 연 도 이월액	불용액 (C)	B/A (%)	C/A (%)
• 자체 지출	209,214	66	-	±376	±242	209,280	203,482	-	5,798	97.2	2.8
- 인재채용	20,901	-	-	±240	-	20,901	20,441	-	460	97.8	2.2
- 인재개발	43,182	-	-	-	-	43,182	43,104	-	78	99.8	0.2
- 공직신뢰구현	2,989	-	-	-	-	2,989	2,958	-	31	99.0	1.0
- 인사혁신확산	31,199	-	-	-	-	31,199	31,063	-	136	99.6	0.4
- 공무원후생복지	6,803	-	-	-	-	6,803	6,593	-	210	96.9	3.1
- 국가인사혁신운영	16,631	-	-	-	△242	16,389	16,033	-	356	97.8	2.2
- 인사혁신행정지원	87,509	66	-	±136	242	87,817	83,290	-	4,527	94.8	5.2
• 회계기금간 거래	4,907,795	-	-	-	-	4,907,795	4,907,795	-	-	100.0	-
- 공무원기금지출	4,907,795	-	-	-	-	4,907,795	4,907,795	-	-	100.0	-
합 계	5,117,009	66	-	±376	±242	5,117,075	5,111,278	-	5,798	99.9	0.1

(2) 전 용

- ☐ 「국가재정법」 제46조에 의한 전용액은 3억 7,600만원으로 전용 사유는 인건비 부족 1억 2,100만원, 사업량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액 3,000만원, 기타 2억 2,5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내 역
합 계	376	
1. 인건비 부족	121	청년인턴 인건비 재원 마련
2. 사업량 증가	30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23.3월) 후 여비 부족분 충당
3. 기타	225	감리사업 및 보험료 재원 마련

(3) 이 용

- ☐ 「국가재정법」 제47조에 따른 이용액은 2억 4,200만원으로, 이용 사유는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 부족임.

[2023회계연도 이용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내 역
합 계	242	
기관운영 필수 경비 부족	242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공요금(전기, 가스) 예산 부족

(4) 이 월

- ☐ 「국가재정법」 제48조에 따른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음

(5) 불 용

- 불용액은 예산현액(5조 1,170억 7,500만원)의 0.1%인 57억 9,800만원으로 불용 사유는 인건비 잔액 39억 7,000만원, 집행잔액 18억 2,800만원임.

[2023회계연도 불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내 역
합 계	5,798	
1. 인건비 잔액	3,970	정원·호봉 미달에 따른 인건비 잔액
2. 집행잔액	1,828	계약 낙찰차액, 사업완료 후 정산잔액 등

(6) 성인지 결산

- 2023년 성인지 예산은 ‘인적자원 역량 개발 및 강화를 통한 공직자 양성’을 목표로 2개 사업에 예산 368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지출액은 예산현액(378억 700만원) 대비 100%인 378억 5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은 2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단위: 백만원)

세부·내역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	불용
합 계	36,841	37,807	37,805	-	2
공무원인재개발 (국외 장·단기 교육훈련)	33,256	34,464	34,464	-	-
교육과정 운영	3,585	3,343	3,341	-	2

2. 공무원연금기금

가. 일반현황

- ☐ 공무원연금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공무원연금법」 제76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음.
- ☐ 「공무원연금법」 제21조에 따른 기여금, 부담금, 보전금 및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주된 재원으로 하며, 「공무원연금법」 제28조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과, 공무원 또는 공무원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한 대부, 기금 증식사업,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공단 운영을 위한 경비 등으로 운용하고 있음.
- ☐ 공무원연금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7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관리·운용하고 있음.

나. 자금 조달 및 운용

- ☐ 2023회계연도 기금 조달액은 27조 3,924억 8,500만원으로 계획 대비 1조 5,583억 4,000만원(△5.4%) 감소하였음. 이는 자치단체 보수예산의 계획대비 감소로 인한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수입 감소, 기존 보유 우량 주식·채권 등 보유기간 연장으로 인한 예치금 회수 감소 등에 기인함.

□ 기금 조달액의 세부내역은 기여금(공무원 본인),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지자체) 등 자체수입이 19조 9,587억 4,600만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국가) 등 정부내부수입이 5조 6,341억 1,600만원, 여유자금 회수가 1조 7,996억 2,300만원임.

□ 2023회계연도 기금 운용액은 27조 3,924억 8,500만원임. 구체적으로는 사업비 지출 25조 26억 1,300만원, 기금운영비 686억 500만원, 정부내부지출 117억 9,800만원, 여유자금운용액 2조 3,094억 6,900만원임.

[2023회계연도 공무원연금기금 조달 및 운용]

(단위: 백만원, %)

과 목		계 획(A)	실 적(B)	비율(B/A)
기금의 조달	자체수입	19,800,576	19,958,746	100.8
	정부내부수입	5,649,088	5,634,116	99.7
	여유자금회수	3,501,161	1,799,623	51.4
	합 계	28,950,825	27,392,485	94.6
기금의 운용	사업비	25,134,143	25,002,613	99.5
	기금운영비	72,548	68,605	94.6
	정부내부지출	11,798	11,798	100.0
	차입금이자상환	123	-	-
	여유자금운용	3,732,213	2,309,469	61.9
	합 계	28,950,825	27,392,485	94.6

다. 재무상태

- 2023년도 말 기준 공무원연금기금의 자산은 21조 3,933억 100만원으로 유동자산은 6,563억 3,400만원 증가하고, 비유동자산이 973억 4,300만원 감소하여 2022년도 말 대비 5,589억 9,100만원 증가함.
- 2023년도 말 기준 부채는 1,037조 9,499억 7,700만원으로 유동부채는 1,851억 4,600만원 감소하였으나, 비유동부채가 45조 8,090억 6,400만원 증가하여 2022년도 말 대비 45조 6,239억 1,800만원 증가함.
- 2023년도 말 순자산총액은 △1,016조 5,566억 7,600만원으로 2022년도 말 대비 45조 649억 2,700만원 감소하였음.

[2023회계연도 공무원연금기금 재무상태]

(단위: 백만원)

과 목		금 액		
		2023년도(A)	2022년도(B)	증감(A-B)
자산	유 동 자 산	4,466,187	3,809,853	656,334
	비 유 동 자 산	16,927,114	17,024,457	△97,343
	합 계	21,393,301	20,834,310	558,991
부채 및 순자산	< 부 채 >	1,037,949,977	992,326,059	45,623,918
	(1) 유동부채	1,238,039	1,423,185	△185,146
	(2) 비유동부채	1,036,711,938	990,902,874	45,809,064
	< 순 자 산 >	△1,016,556,676	△971,491,749	△45,064,927
	(1) 기본순자산	4,013,533	4,013,533	-
	(2) 적립금 및 잉여금	△1,025,968,073	△980,373,528	△45,594,545
	(3) 순자산조정	5,397,864	4,868,246	529,618
	합 계	21,393,301	20,834,310	558,991

라.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 공무원연금기금은 2023회계연도 총 6회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었으며, 변경사유는 대여학자금 대부건수 증가로 인한 예산 확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위한 정책연구비 예산 확보, 명예퇴직 및 일반퇴직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 증가, 전기료 인상 및 복지시설 정상영업에 따른 복지시설운영 예산 확보, 퇴직급여·재해보상급여 및 보증금 반환 예산 확보 등임.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순번	세부사업명	당 초(A)	변 경(B)	증 감(B-A)
1	대여학자금융자	446,852	525,571	78,719
	통화금융기관예치금	941,107	862,388	△78,719
2	기금관리비	10,423	10,423	±35
3	퇴직수당	2,741,776	2,853,776	112,000
	퇴직급여	19,759,680	19,647,680	△112,000
4	복지시설운영	48,427	48,781	354
	지부시설관리	19,514	19,160	△354
5	퇴직급여	19,647,680	20,250,680	603,000
	재해보상급여	196,529	208,229	11,700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796,901	1,182,201	△614,700
6	주택사업관리	412,371	437,171	24,800
	임대주택건립	20,408	15,746	△4,662
	통화금융기관예치금	862,388	842,250	△20,138

주) 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동일 세부사업 내 목 간 계획 변경임

3. 예비비

- ☐ 인사혁신처는 2023회계연도에 예비비 배정 및 집행액이 없음.

4. 재무결산

- ☐ 인사혁신처는 일반회계, 공무원연금기금을 포함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음.

가. 재정상태 분석

- ☐ 2023년 말 인사혁신처 자산 총액은 20조 9,590억원으로 2022년 말 대비 6,217억원(3.1%) 증가하였으며, 주로 유동자산 증가(5,524억원) 및 투자자산 증가(4,269억원)에 기인함.
- ☐ 부채 총액은 1,036조 9,711억원으로 2022년 말 대비 45조 6,948억원 (4.6%) 증가하였으며, 주로 장기충당부채⁶⁾ 증가(45조 6,212억원)에 기인함.
- ☐ 이에 따라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은 △1,016조 121억원으로 2022년 말 대비 45조 732억원(4.6%) 감소하였음.

6)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장기충당부채) 장기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연금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및 기타 장기충당부채 등을 말한다.

[2023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A)	2022(B)	증 감 (A-B)	
			금액(C=A-B)	비율(C/B)
I. 자산(a)	20,959,020	20,337,333	621,687	3.1
· 유동자산	4,045,749	3,493,332	552,417	15.8
· 투자자산	9,138,769	8,711,830	426,939	4.9
· 일반유형자산	7,200,821	7,224,288	△ 23,467	△ 0.3
· 무형자산	41,449	46,109	△ 4,660	△ 10.1
· 기타비유동자산	532,232	861,773	△ 329,541	△ 38.2
II. 부채(b)	1,036,971,120	991,276,280	45,694,840	4.6
· 유동부채	1,102,207	1,254,746	△ 152,539	△ 12.2
· 장기차입부채	2,169,070	2,254,926	△ 85,856	△ 3.8
· 장기충당부채	1,032,309,907	986,688,688	45,621,219	4.6
· 기타비유동부채	1,389,936	1,077,920	312,016	28.9
III. 순자산(a-b)	△ 1,016,012,100	△ 970,938,947	△ 45,073,153	△ 4.6
· 기본순자산	4,688,907	4,688,907	-	0.0
· 적립금 및 잉여금	△ 1,026,187,477	△ 980,584,716	△ 45,602,761	△ 4.7
· 순자산조정	5,486,470	4,956,862	529,608	10.7

※ 자료: 인사혁신처, 「2023회계연도 인사혁신처 결산보고서」, 2024.

자산의 종류	설 명
유동자산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증권, 미수채권 등)
투자자산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장기대여금 및 기타투자자산 등)
일반유형자산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등)
무형자산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산업재산권, 광업권, 소프트웨어 등)
기타비유동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

나. 재정운영 분석

-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사업)별 원가가 얼마인지 계산해서 표시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총원가(프로그램 수행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서 프로그램 수익(프로그램과 직접 관련 있는 수익)을 차감한 프로그램순원가에 관리비용(인건비 등 프로그램 수행을 지원하는 비용)과 비배분비용(대손상각비 등 프로그램에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비용)을 합산하고, 비배분수익(과오지급금 회수금 등 프로그램에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를 표시하며, 여기에 국세, 부담금 등 비교환수익을 차감하여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함.

재정운영결과(국가 사업의 원가 분석) =

$$\begin{aligned} & \text{프로그램 순원가(프로그램 총원가 - 프로그램 수익)} \\ & + \text{관리비용} + \text{비배분비용} \\ & - \text{비배분수익} \\ & - \text{비교환수익} \end{aligned}$$

- 2023년 말 인사혁신처의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 36조 7,082억원 및 관리운영비 980억원, 비배분비용 593억원을 합산하고, 비배분수익 3,318억원을 차감한 36조 5,337억원임.
- 2023년 말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 36조 5,337억원에서 비교환수익 등 3조 9,193억원을 차감한 32조 6,144억원임.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총원가 54조 325억원에서 프로그램수익 17조 3,242억원을 차감한 36조 7,082억원으로, 프로그램순원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무원연금급여지급 프로그램’이며 동 프로그램의 총 원가는 53조 6,512억 원이고 프로그램수익은 17조 213억 원임.
- 둘째,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688억원과 기타경비 292억원을 합산한 980억 원임.
- 셋째, 비배분비용은 자산처분손실 530억 원 및 기타비용 63억 원 등을 합산한 593억 원임.
- 넷째, 비배분수익은 이자수익 2,705억 원, 자산처분이익 413억 원, 배당금수익 157억 원 및 기타수익 43억 원 등을 합산한 3,318억 원임.
- 마지막으로, 비교환수익 등은 전액 기금회계 금액으로 기타재원조달 및 이전 3조 9,193억 원임.

[2023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I. 프로그램순원가	36,708,203
II. 관리운영비	98,042
III. 비배분비용	59,326
IV. 비배분수익	331,842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36,533,729
VI. 비교환수익 등	3,919,341
VII. 재정운영결과(V - VI)	32,614,388

※ 자료: 인사혁신처, 「2023회계연도 인사혁신처 결산보고서」, 2024.

다. 순자산변동 분석

- 순자산 변동표는 순자산의 한 해 동안 변동 내역을 표시하는데, 기초순자산(전기에 이미 보고된 순자산 금액에 전기오류수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정)에서 재정운영결과(재정운영표상 사업원가)를 차감하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재원의 조달은 직접적인 반대 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인 국세, 부담금 등 비교환수익과 예산배정액의 실제 집행액을 의미하는 국고수입, 재원의 이전은 순자산 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중앙관서 간의 무상이전거래와 국고이전지출을 의미함) 및 조정 항목(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 중 납입자본의 증감, 투자증권 평가손익 등 재원의 조달 및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을 합산한 결과를 기말순자산으로 표시함.

$$\text{기말순자산} = \text{기초순자산} - \text{재정운영결과} + \text{재원의 조달 및 이전} + \text{조정 항목}$$

- 인사혁신처의 순자산은 2023년 말 기준 △1,016조 121억원으로, 2023년 기초순자산은 △970조 9,389억원, 재정운영결과 32조 6,144억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 2조 2,397억원, 조정 항목 △14조 6,985억원임.
-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5조 1,113억원 및 기타 재원의 조달 23억원 등 5조 1,136억원이 재원의 조달로, 국고이전지출 63억원 및 기타 재원의 이전 2조 8,676억원 등 2조 8,739억원이 재원의 이전으로 계상된 것이며,
- 조정 항목 △14조 6,985억원은 주로 공무원 연금충당부채 등의 연금보험수리적 손익 변동에 따른 기타순자산증감 △15조 2,281억원과 자산재평가이익 75억원 및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5,221억원 등으로 인한 것임. 이에 따라 기말순자산은 △1,016조 121억원으로 계상됨.

[2023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I. 기초순자산	△970,938,947
II. 재정운영결과	32,614,388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2,239,719
IV. 조정항목	△14,698,484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1,016,012,100

※ 자료: 인사혁신처, 「2023회계연도 인사혁신처 결산보고서」, 2024.

【경찰청 소관】

1. 일반회계

가. 세 입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개요]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일반회계 세입	1,125,327	2,658,322	1,377,276	122.4	51.8	5,019	1,276,026

※ 자료 : 경찰청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조 1,253억 2,700만원으로, 2조 6,583억 2,2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예산액 대비 122.4%, 징수결정액 대비 51.8%에 해당하는 1조 3,772억 7,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조 2,760억 2,6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125,327	1,125,327	2,658,322	1,377,276	5,019	1,276,026
재산수입	3,854	3,854	4,554	4,317	-	237
경상이전수입	1,110,821	1,110,821	2,643,462	1,362,706	5,019	1,275,737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462	4,462	6,286	6,233	-	52
관유물매각대	6,190	6,190	4,020	4,020	-	-

※ 자료 : 경찰청

-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2018년부터 공익신고의 활성화 및 체납과태료 징수를 제고 노력으로 과태료 수납액이 증가하여 122.4%임.

[연도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률(2018년도~2023년도)]

(단위: %)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률	93.4	99.8	102.3	115.6	128.1	122.4

※ 자료: 경찰청

- 세입과목별로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수입, 벌금 및 과태료로 구성된 경상이전수입,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은 초과 수납하였으나, 관유물매각대의 수납액은 미달되었음.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수납액	세입예산액 과의 차이	내 역
합 계	1,125,327	1,377,276	251,949	
재산수입	3,854	4,317	463	관유물(토지, 건물) 대여료
경상이전수입	1,110,821	1,362,706	251,885	벌금 및 과료, 과태료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462	6,233	1,771	기타 잡수입
관유물매각대	6,190	4,020	△2,170	기계기구 등 고정자산 매각대

※ 자료: 경찰청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세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과 목	세 입 예산액	수납액	미수납액	세입예산액과 수납액 차이	증 감 사 유
합 계	1,125,327	1,377,276	1,276,026	251,949	
재 산 수 입	3,854	4,317	237	463	
토지대여료	1,421	982	230	△439	• 토지임대료 수입 감소
건물대여료	1,717	2,233	5	516	• 건물임대료 수입 증가
기타관유물대여료	-	1	-	1	• 기타관유물 대여 수입 증가
기타재산수입	716	1,101	3	385	• 이자수입 증가
경상이전수입	1,110,821	1,362,706	1,275,737	251,885	
별 금 및 과 료	92,312	76,024	0	△16,288	• 통고처분 감소
과 태 료	969,554	1,228,436	1,060,986	258,882	• 과태료처분 증가
징 계부가금	23	158	589	135	• 징계부가금 수입 증가
변 상 금	118	153	2,549	36	• 체납변상금 징수 증가
위 약 금	1,738	590	0	△1,148	• 위약금 감소
가 산 금	36,110	32,290	209,064	3,819	• 가산금 수입 증가
기타경상이전수입	10,966	25,054	2,546	14,088	• 과오지급 반환금 등 증가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462	6,233	-	1,771	
면허료 및 수수료	881	925	-	44	• 시험응시료 수입 증가
수업료	430	532	32	102	• 수업료 수입 증가
기타잡수입	3,151	4,775	20	1,624	• 잡수익 증가
관유물매각대	6,190	4,020	-	△2,170	
기계기구매각대	5,094	3,633	-	△1,461	• 기계기구 매각 감소
기타고정자산매각대	469	373	-	△96	• 기자재 등 매각 감소
토지매각대	627	15	-	△612	• 토지교환에 따른 차액 감소

※ 자료: 경찰청

- 재산수입에서는 세입예산액의 112.0%에 해당하는 43억 1,700만원이 수납되었는바, 이는 은행예치 이자수입 등 증가에 따른 것임.
- 경상이전수입에서는 세입예산액의 122.7%에 해당하는 1조 3,627억 600만원 수납되었는바, 그 주요원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대수 증가 및 공익신고 활성화로 과태료 수납액 증가에 따른 것임.
-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에서는 세입예산액의 139.7%에 해당하는 62억 3,300만원이 수납되었는바, 그 주요원인은 잡수익이 세입예산액보다 16억 2,400만원 증가되는 등에 따른 것임.
- 관유물매각대에서는 세입예산액의 64.9%에 해당하는 40억 2,000만원을 수납하였는바, 기계기구매각대 수입 감소 등에 따른 것임.

나. 세 출

(1) 총 괄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조 4,013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79억 2,3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2조 4,192억 6,3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8.9%인 12조 2,863억 1,2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56억 6,200만원이며, 불용액은 1,072억 8,9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프로그램	세 출 예산액 (추경포함)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 용 감	이 용 감	세출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2,401,341	17,923	-	±24,522	±7,435	12,419,263	12,286,312	25,662	107,289
범죄예방 및 사회적약자보호	12,605	11	-	±215	-	12,616	12,143	-	472
범죄수사활동	372,220	1,101	-	±1,152	-	373,321	368,523	186	4,612
교통안전·소통확보	290,993	149	-	±440	-3,712	291,142	278,691	325	12,126
치안상황대응강화	46,430	2,234	-	±245	-	48,664	44,729	2,190	1,745
사회질서유지	129,069	1,489	-	±2,551	-	130,558	124,073	1,159	5,326
공공안전위험예 방 및 대응강화	34,619	-	-	-	-	34,619	34,259	-	360
국가안보확보	57,814	315	-	±192	-	58,129	56,226	-	1,902
전문경찰양성	64,771	5,945	-	±424	-	70,716	66,722	2,657	1,337
치안인프라구축	485,427	5,042	-	±114	-3,723	490,469	430,474	17,984	42,010
과학치안활성화	67,418	-	-	-	-	67,418	67,417	-	1
경찰행정지원	10,809,941	1,637	-	±19,189	7,435	10,811,578	10,773,018	1,161	37,399
회계간거래 (전 출 금)	30,035	-	-	-	-	30,035	30,035	-	0

※ 자료: 경찰청

- 이용액은 74억 3,500만원으로 공공요금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음.
- 전용액은 245억 2,200만원으로 공공요금, 교육기관 인건비, 여비규정 개정으로 인한 부족액 등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음.
- 다음연도 이월액 256억 6,200만원은 방검복 개발 지연 124억 100만원, 전기다목적 순찰차량 생산 지연 25억 7,800만원, 중앙학교 리모델링 공사 지연 23억 8,800만원 등에 따른 것이며,
불용액 1,072억 8,900만원은 차량 유류비 집행 잔액 299억 9,500만원, 관서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772억 9,400만원임.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출규모는 전년 대비 2.3%, 2,884억 5,100만원이 증가한 12조 2,863억 1,200만원임.

<연도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출현황('18년도~'23년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지출액	10,232,804	10,673,003	11,176,395	11,639,009	11,997,861	12,286,312
증감액	305,502	440,199	503,392	462,613	358,852	288,451
증감률	3.1	4.3	4.7	4.1	3.1	2.3

※ 자료: 경찰청

□ 세출예산 비목별로는 이전지출이 자치경찰 예산 미편성(시·도 자체 예산 편성)에 따라 전년대비 27.9% 감소함.

□ 전출금 등은 경찰병원 손익전출금 감액으로 전년대비 16.4% 감소함.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비목별 지출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전출금
2023년도	12,286,312	9,686,591	1,853,288	290,397	426,000	30,035
2022년도	11,997,861	9,314,699	1,810,336	402,776	434,113	35,937
증감액	288,451	371,892	42,952	△112,379	△8,113	△5,902
증감률	2.4	4.0	2.4	△27.9	△1.9	△16.4

※ 자료 : 경찰청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경비성격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9조 6,865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718억 9,200만원
(4.0%) 증가하였음.

□ 사업비는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이양 사업 1,299억원 예산 감액으로
전년도 대비 1,125억원 감소하였음.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경비성격별 지출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증 감	
				%
합 계	11,997,861	12,286,312	288,451	2.4
인 건 비	9,314,699	9,686,591	371,892	4.0
기 본 경 비	367,666	396,784	29,118	7.9
사 업 비	2,315,496	2,202,937	△112,559	△4.9

※ 자료: 경찰청

(2) 이 용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액은 74억 3,5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A)	2023년도(B)	증감액(B-A)	증감률
이 용	-	7,435	7,435	-

※ 자료: 경찰청

☐ 이용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요금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음.

(3) 전 용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액은 245억 2,200만원으로 2022년도 60억 4,400만원 대비 184억 7,800만원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A)	2023년도(B)	증감액(B-A)	증감률
전 용	6,044	24,522	18,478	405.7

※ 자료: 경찰청

- 전용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요금 부족액 99억원, 교육기관 인건비 부족액 59억 500만원, 공무원여비규정 개선에 따른 여비 부족액 40억 3,000만원 등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음.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전 용 내 역
합 계	24,522	
공공요금	9,900	· 공공요금 부족
보수	5,905	· 교육기관 인건비 부족
여비	4,030	· 공무원여비규정 개선에 따른 여비 부족
동원급식비	2,020	· 동원급식비 부족
일용임금	1,781	· 청년인턴 임금
기타	886	· 직제개정 추가소요, 배상금

※ 자료: 경찰청

(4) 이 월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은 256억 6,200만원으로, 2022년도 179억 2,200만원 대비 77억 4,000만원 43.2%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A)	2023년도(B)	증감액(B-A)	증감률
이 월	17,922	25,662	7,740	43.2

※ 자료: 경찰청

-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방검복 개발 지연 124억 100만원, 전기다목적 순찰차량 생산 지연 25억 7,800만원, 중앙학교 리모델링 공사 지연 23억 8,800만원 등이 이월되었음.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이 월 내 역
합 계	25,662	
물건비	14,921	· 방검복 개발 지연(12,401) 등
자산취득비	10,741	· 전기순찰차 제작 지연(2,578), 중앙학교 강의동 리모델링 공사 지연(2,388) 등

※ 자료: 경찰청

(5) 불 용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은 1,072억 8,900만원으로, 2022년도 2,157억 5,400만원 대비 1,084억 6,500만원(50.3%)이 감소하였음.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A)	2023년도(B)	증감액(B-A)	증감률
불 용	215,754	107,289	△108,465	△50.3

※ 자료: 경찰청

-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차량 유류비 집행 잔액 299억 9,500만원, 관서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772억 9,4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불 용 내 역
합 계	107,289	
차량 유류비 집행잔액	29,995	· 편성, 집행단가 차이로 인한 집행잔액
기타 집행잔액	77,294	· 낙찰차액 및 관서별 소규모 집행잔액 등

※ 자료: 경찰청

2.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경찰병원)

- 경찰병원은 2006년부터 책임운영기관⁷⁾으로 지정되어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바, 경찰병원의 특별회계는 손익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운용되고 있음.

가. 세 입

<2023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세입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손 익 계 정	80,320	81,974	81,949	-	25
영업수입	32,799	29,519	29,499	-	20
재화및용역판매수입 등	6,460	6,510	6,505	-	5
전년도세계잉여금	13,985	18,869	18,869	-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7,076	27,076	27,076	-	-
자 본 계 정	3,010	3,341	3,341	-	-
전년도세계잉여금	49	380	380	-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961	2,961	2,961	-	-

※ 자료: 경찰청

- 손익계정의 당초 세입예산액은 803억 2,000만원으로, 819억 7,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819억 4,900만원을 수납하고, 자본계정의 세입예산액은 30억 1,000만원으로, 33억 4,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를 전액 수납하였음.

7)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② ~ ④ (생략)

나. 세 출

<2023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세출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초과지출 승인액	전 용	이 용 이 체				
손 익 계 정	80,320	36	-	±874	±564	80,356	78,277	35	2,044
인 건 비	43,182	-	-	-595	-564	42,023	40,584	-	1,439
기본경비	2,733	-	-	+449	-	3,182	3,071	-	111
진료업무지원	25,867	36	-	+263 -122	-	26,044	25,647	35	362
장례식장운영	3,916	-	-	+162 -157	-	3,921	3,789	-	132
공무원연금부담금	4,620	-	-	-	+564	5,184	5,184	-	-
감가상각비	1	-	-	-	-	1	1	-	-
당기순이익	1	-	-	-	-	1	1	-	-
자 본 계 정	3,010	-	-	-	-	3,010	2,782	-	228
기본경비	183	-	-	-	-	183	183	-	-
자산취득	2,827	-	-	-	-	2,827	2,599	-	228

※ 자료: 경찰청

□ 손익계정의 세출예산액은 803억 2,000만원이고 전년도이월액 36백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803억 5,6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782억 7,700만원이며, 20억 4,400만원을 불용하였음.

자본계정의 세출예산(현)액은 30억 1,000만원이고, 지출액은 27억 8,200만원이며, 2억 2,800만원은 불용하였음.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라 함)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운용하며, 동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되어 있음⁸⁾.

□ 경찰청은 동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제주자치경찰인력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을 위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음.

<2023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이용 이체				
계	4,767	-	-	-	4,767	4,767	-	-
제주자치경찰인력지원 제주계정	4,767	-	-	-	4,767	4,767	-	-

※ 자료: 경찰청

□ 2023년도 동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은 47억 6,7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음.

8)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0조(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발전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1조(회계의 관리·운용) ① 회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32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한다.

4. 재무결산

가. 재정상태 분석

<2023회계연도 경찰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A)	2023년도(B)	증 감 (B-A)	
			금 액	비 율
I. 자산	17,421,346	17,813,160	391,814	2.2
· 유동자산	1,215,843	1,308,108	92,265	7.6
· 일반유형자산	16,077,236	16,367,822	290,586	1.8
· 무형자산	90,549	98,980	8,431	9.3
· 기타비유동자산	37,717	38,250	533	1.4
II. 부채	347,959	395,123	47,164	13.6
· 유동부채	42,176	49,693	7,517	17.8
· 장기차입부채	68,939	62,556	△6,383	△9.3
· 장기충당부채	89,554	104,738	15,184	17.0
· 기타비유동부채	147,291	178,136	30,845	20.9
III. 순자산	17,073,386	17,418,038	344,652	2.0
· 기본순자산	6,898,650	6,898,650	-	-
· 적립금및잉여금	3,287,423	3,627,942	340,519	10.4
· 순자산조정	6,887,313	6,891,446	4,133	0.1

※ 자료: 경찰청

□ 2023년말 현재 경찰청의 자산총액은 17조 8,131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918억 1,400만원(2.2%) 증가하였는데, 주로 토지 및 건물 등의 취득 등에 따른 일반유형자산이 2,905억 8,6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 부채 총액은 3,951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71억 6,400만원

(13.6%)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증가에 따른 장기충당부채 151억 8,400만원 증가, 어린이집과 관련된 신규 BTL임대료장기미지급금 등에 따른 기타비유동부채 308억 4,5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은 17조 4,180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446억 5,200만원(2.0%) 증가하였음.

나. 재정운영 분석

<2023회계연도 경찰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A)	2023년도 (B)	증 감 (B-A)	
			금 액	비 율
I. 프로그램순원가 (가 - 나)	1,581,419	1,479,560	△ 101,859	△ 6.4
가. 프로그램총원가	1,618,673	1,515,392	△ 103,281	△ 6.4
나.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37,254	35,832	△ 1,422	△ 3.8
II. 관리운영비	11,962,061	12,401,048	438,987	3.7
III. 비배분비용	7,121	939	△ 6,182	△ 86.8
IV. 비배분수익	88,123	55,165	△ 32,958	△ 37.4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13,462,477	13,826,382	363,905	2.7
VI. 비교환수익 등	167	233	66	39.5
VII. 재정운영결과(V-VI)	13,462,310	13,826,148	363,838	2.7

※ 자료: 경찰청

-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제외한 금액인바, 2023년도 재정운영결과는 13조 8,261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인 3,638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관리운영비가 4,389억 8,7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23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프로그램순원가는 1조 4,795억 6,000만원이었음.

□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13조 8,263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인 3,639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음.

다. 순자산변동 분석

<2023회계연도 경찰청 순자산 변동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A)	2023년도(B)	증 감 (B-A)	
			금 액	비 율
I. 기초순자산	16,641,046	17,073,386	432,340	2.6
II. 재정운영결과	13,462,310	13,826,148	363,838	2.7
III. 재원의조달및이전	13,843,553	14,166,667	323,114	2.3
IV. 조정항목	51,097	4,133	△ 46,964	△ 91.9
V.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17,073,386	17,418,038	344,652	2.0

※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의 2023년도 기말순자산은 17조 4,180억 3,800만원으로 2022년말 대비 2.0%인 3,446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13조 8,261억 4,800만원 발생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조달및이전은 14조 1,666억 6,700만원, 조정항목은 41억 3,300만원 발생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임.

【소방청 소관】

1. 일반회계

가. 세 입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일반회계	4,246	4,072	3,776	88.9	92.7	0	296

※ 자료: 소방청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2억 4,600만원이며 40억 7,20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92.7%에 해당하는 37억 7,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억 9,600만원임.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세입예산 현 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4,246	4,246	4,072	3,776	0	296
재산수입	162	162	456	429	0	27
경상이전수입	2,335	2,335	1,965	1,696	0	269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36	236	170	170	0	0
수입대체경비수입	1,513	1,513	1,481	1,481	0	0

※ 자료: 소방청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세입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과 목	세 입 예산액	수납액	미수납액	세입예산액과 수납액 차이	증 감 사 유
합 계	4,246	3,776	296	△470	
재 산 수 입	162	429	27	260	
관유물대여료	17	7	0	△10	중앙소방학교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완 화 지원기간 연장으로 반환금 발생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45	422	27	277	국고보조사업 잔액 증가(이자 증가)
경상이전수입	2,335	1,696	269	△639	
벌금 및 과태료	1	0	0	△1	사유 미발생
변상금 및 위약금	126	287	0	161	고가장비 구매 건 지체상금 발생
기타경상이전수입	2,208	1,409	269	△531	국고보조금 및 출연금 집행잔액 과소 발생
채화및용역판매수입	236	170	0	△66	
면허료 및 수수료	200	117	0	△83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인원 감소
잡수입	36	53	0	17	
수입대체경비수입	1,513	1,481	0	△32	
기타잡수입	1,513	1,481	0	△32	신임소방사 교육인원 감소

※ 자료 : 소방청

- 재산수입에서는 2,700만원이 미수납되었는 바, 이는 국고보조금 종료에 따른 발생이자이며, 경상이전수입에서 2억 6,900만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수납에 따른 것임.

나. 세 출

(1) 총 괄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87억 8,1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188억 9,8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3,276억 7,9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88.1%인 2,887억 7,4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86억 4,500만원이며, 불용액은 102억 6,000만원임.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프로그램	세 출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 중 용 감	이 용	세출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308,781	18,898	-	±3,844	-	327,679	288,774	28,645	10,260
소방정책지원	227,397	18,867	-	±3,270	-	246,265	208,875	28,360	9,030
소방행정지원	81,384	31	-	±574	-	81,414	79,899	285	1,230

※ 자료 : 소방청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이 · 전용 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이 용	전 용
계	308,731	327,679		±3,844
인 건 비	65,774	65,774		±243
기 본 경 비	8,587	8,684		±331
사 업 비	180,935	188,157		±3,270

※ 자료 : 소방청

□ 전용액은 총 38억 4,400만원으로, 중앙119구조본부 유해화학물질 대응훈련장 건설을 위한 재원 15억 5,000만원(전용액의 40.3%), 여비 단가 상승에 따른 국내여비 재원 마련 2억 1,600만원(전용액의 5.6%), 청년인턴제 운영에 따른 일용임금 재원 마련 2억 1,200만원(전용액의 5.5%) 등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음.

□ 다음연도 이월액 286억 4,500만원의 이월사유는,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 115억 600만원(이월액의 40.2%),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사업 102억 5,600만원(이월액의 35.8%) 등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지진대비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장 및 비축기지 건립 사업 19억 2,400만원(이월액의 6.7%) 등이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음.

(2) 전 용

-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액은 38억 4,400만원임.
- ☐ 전용내역을 살펴보면, 청년인턴일용임금 재원 마련 2억 1,200만원, 사무환경 조성 및 기본경비 부족분 마련 3억 2,900만원, 중앙119구조본부 유해화학물질 대응훈련장 건설을 위한 재원 15억 5,000만원 등을 전용하였음.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전 용 내 역
합 계	±3,844	
인건비	±243	청년인턴제 운영 등에 따른 재원 마련(212) 등
기본경비	±331	사무환경 조성 및 기본경비 부족분 마련(329) 등
사업비	±3,270	유해화학물질 대응훈련장 건설 재원 마련(1,550) ⁹⁾ 등

※ 자료 : 소방청

(3) 이 월

-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은 전년대비 97억 4,700만원 증가한 286억 4,500만원임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A)	2022년(B)	증감액(A-B)	증감률
이 월	28,645	18,898	9,747	51.6

※ 자료 : 소방청

9) 공사비 비목으로 발주할 경우 간접공사비(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각종 보험료 등)를 반영하여야 하므로 소요예산액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당초 설계한 훈련시설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조달청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사비 15억 5,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해서 사용했다고 소방청은 설명함.

-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다음연도 이월액 286억 4,500만원은 국립소방병원 건립 115억 600만원,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사업 102억 5,600만원, 지진대비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장 및 비축기지 건립 사업 19억 2,400만원, 기본경비 2억 6,900만원 등이 각각 이월되었음.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이 월 내 역
합 계	28,645	
절대공기 부족	22,182	국립소방병원건립(11,506), 국립소방박물관 건립(10,256) 등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6,194	지진대비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장 및 비축기지 건립(1,924) 등
기본경비	269	소방청 및 소속기관 정상적 경비 이월

※ 자료 : 소방청

(4) 불 용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은 전년대비 33억 300만원 증가한 102억 6,000만원임.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A)	2022년(B)	증감액(A-B)	증감률
불 용	10,260	6,957	3,303	47.5

※ 자료 : 소방청

□ 불용 내역을 살펴보면, 불용액 102억 6,000만원은 소방청 인건비 집행잔액 4억 4,600만원, 국립소방병원건립 등 사업비 집행잔액 90억 3,000만원, 기본경비 7억 8,400만원 등임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불 용 내 역
합 계	10,260	
인건비 집행잔액	446	인건비 집행잔액
사업비 집행잔액	9,030	개별 사업비의 낙찰차액, 집행잔액
기본경비 집행잔액	784	기본경비 집행잔액

※ 자료 : 소방청

2. 재무결산

가. 재정상태 분석

< 2023회계연도 소방청 재정상태표 요약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A)	2022년도(B)	증 감 (A-B)	
			금 액	비 율
I. 자산	644,706	535,337	109,369	20.4
· 유동자산	2,895	2,968	△73	△23.5
· 투자자산	602	599	3	0.5
· 일반유형자산	607,447	508,947	98,500	19.4
· 무형자산	31,958	21,316	10,641	49.9
· 기타비유동자산	1,804	1,507	297	19.7
II. 부채	23	8	15	187.5
· 유동부채	23	8	15	187.5
· 장기차입부채	0	0	0	0.0
· 장기충당부채	0	0	0	0.0
·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0
III. 순자산	644,683	535,329	109,354	20.4
· 기본순자산	127,392	149,210	△21,818	△14.6
· 적립금및잉여금	221,468	258,548	△34,080	△14.3
· 순자산조정	221,468	258,548	△34,080	△14.3

※ 자료 : 소방청

□ 2023회계연도말 기준 소방청 자산은 전년 대비 1,093억원 6,900만원이 증가한 6,447억 600만원으로 일반유형자산이 985억원, 무형자산이 106억 4,100만원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부채는 전년 대비 1,500만원 증가한 2,300만원으로 유동부채의 1,500만원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093억5,400만원 증가한 6,446억 8,300만원임.

나. 재정운영 분석

< 2023회계연도 소방청 재정운영표 요약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A)	2022년도 (B)	증 감 (A-B)	
			금 액	비 율
I. 프로그램순원가 (가 - 나)	127,351	149,210	△21,859	△14.6
가. 프로그램총원가	128,832	150,016	△21,184	△14.1
나.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481	806	675	83.8
II. 관리운영비	96,255	91,890	4,365	4.8
III. 비배분비용	278	20,440	△20,162	△98.6
IV. 비배분수익	2,416	2,992	△576	△19.3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221,468	258,548	△37,080	△14.3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0.0
VII. 재정운영결과(V-VI)	221,468	258,548	△37,080	△14.3

- ☐ 2023회계연도 소방청의 프로그램순원가는 1,273억 5,100만원이며, 재정운영결과는 2,214억 6,800만원임.
- ☐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1,288억 3,200만원, 관리운영비 962억 5,500만원, 비배분비용 2억 7,8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 수익 14억 8,100만원, 비배분수익 24억 1,600만원으로 구성됨.
- ☐ 2023년도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 대비 370억 800만원 감소한 2,214억 6,800만원임.
- ☐ 이는 주로 소방정책지원으로 발생하였고, 프로그램순원가는 1,273억 5,100만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690억 1,700만원, 경비 272억 3,700백만원이 발

생하였으며, 비배분비용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재평가 오류정정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실 201억 6,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프로그램순원가는 소방정책지원 프로그램(1,273억 5,100만원)으로 나타났음.

다. 순자산변동 분석

< 2023회계연도 소방청 순자산 변동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A)	2022년도 (B)	증 감 (A-B)	
			금 액	비 율
I. 기초순자산	535,329	553,323	△17,994	△3.3
II. 재정운영결과	221,468	258,548	△37,080	△14.3
III. 재원의조달및이전	331,286	267,302	63,984	23.9
IV. 조정항목	△424	△26,748	26,323	98.4
V. 기말순자산 (I-Ⅱ+Ⅲ+Ⅳ)	644,724	535,329	109,395	20.4

□ 소방청의 2023년도 기초순자산은 5,353억 2,9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6,447억 2,400만원으로 기초순자산 대비 1,093억 9,500만원(20.4%) 증가하였음.

IV.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행정안전부 소관】

【총괄: 이용·전용·내역변경·세목조정 분석】

- 최근 5년(2019~2023회계연도)간 4회 이상 이·전용등을 통한 증액이 있었던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5회(매년) 이·전용등을 통한 증액이 있었던 세부사업은 40개 사업, 4회는 29개 사업임.
- 최근 5년(2019~2023회계연도)간 4회 이상 이·전용등을 통한 감액이 있었던 세부 사업은, 5회(매년) 이·전용등을 통한 감액이 있었던 세부사업은 47개 사업, 4회는 34개 사업임.
- 이·전용 등 실시 후 20% 이상을 미집행(이월·불용)한 사업을 살펴보면, 총 24개 세부사업 32개 세목에서 22억 5,000만원을 이·전용 등 받았으나 2억 8,400만원을 이월하고 10억 3,100만원을 불용하였음. 11월 이후 이·전용등을 한 후 20% 이상을 미집행한 사업을 살펴보면, 총 15개 세부사업(전용 4개, 세목조정 11개)의 사례가 있었음. 미집행 금액이 이·전용등을 받은 금액 이상인 경우는 총 9개 세부사업(전용 2개, 세목조정 7개)의 사례가 있었음.
- 3월 이전에 이·전용등을 실시한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국과수기본경비(총액), 재난협력실기본경비, 과학수사감정지원, 자치분권위원회운영, 대통령기록관리 등 총 5개 세부사업이 있었음.
- 특정 세부사업·세목으로부터 이·전용등을 받은 후 이를 다시 다른 세부사업·세목으로 이·전용등을 하여주거나, 다른 세부사업·세목으로 이·전용등을 한 후 해당 예산이 부족하여 이를 다시 이·전용등 받는 사례(이하 “이·전용등 번복”)도 발생하였음. 과학수사감정지원 세부사업의 경우 총 6개 세목에서 이·전용등의 번복 실시가 발생하였고, 재난관리실 기본경비 세부사업의 경우 총 3개 세목에서 이·전용등의 번복 실시가 발생하였으며, 재난협력실기본경비 세부사업의 경우 총 2개 세목에서 이·전용등의 번복 실시가 발생하였고,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 세부사업의 경우에도 총 2개 세목에서 이·전용등의 번복 실시가 발생하였으며, 지방자치분권실 세부사업의 경우 일반수용비(210-01)에서 이·전용등의 번복 실시가 발생하였음.

【세입결산】

1.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및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 2023회계연도 기준 자치단체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금액은 총 430억 900만원 (612건)으로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 444억 200만원의 97.0%를 차지하고 있고, 자치단체보조금 발생이자 미반환 금액은 총 33억 9,000만원(670건)으로 기타재산이자수입 미수납액 34억 9,500만원의 97.0%를 차지하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일시정지 및 미반환금 상계 등의 제재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치단체보조금 미반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환받을 필요가 있음.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1349-306)은 2022년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어 해당 특별회계에서 보조금이 교부되었으나 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일반회계에서 징수결정하여 수납받았음. 행정안전부는 회계 이관 사업을 중심으로 보조금 교부와 집행잔액·발생이자 반환 간에 회계 불일치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음.

【세 출】

【의정관실】

1. 국경일 등 정부행사(2131-300)

- 의정관은 휴일에 개최되는 정부의전행사에 근무한 직원에게 내부지침에 근거하여 행사수당을 지급해오고 있으나, 해당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된 행정규칙에 해당되는 지침이 아니며, ‘정부의전행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현행 시간외근로수당, 대체휴무 등의 제도 활용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사수당의 필요성, 지급 대상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민 방한 환영행사에서 행사장 설치 등 행사운영 경비를 여러 건의 지출로 분할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한 바, 이는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향후 관서운영경비 제도 운용 시 제한금액 이상의 지출을 분할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디지털정부혁신실】

2. 지식기반의 행정구축(정보화)(1932-505)

- 대한민국 지식대상 개최는 연례적으로 편성된 일반수용비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면서 부족한 비용을 타 내역사업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바, 행정안전부는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의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예산범위 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다 면밀히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온-나라 정책연구용역 관리 사업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선정한 우수과제의 표절 여부 심사를 내역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편성내역과 달리 정책연구관리 안내,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운영 및 이용안내 또는 지식행정 활성화 사업에 집행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에 차이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온-나라 정책연구용역 관리 사업의 예산 편성 시 실제 집행 내역을 반영하여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전자정부지원(정보화)(2031-500)

- 2023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은 7개 과제 중 2개 과제의 예산을 전액 2024년도로 이월하였음. 예산을 대규모로 이월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결산에서 해당 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과를 점검할 수 없는바, 행정안전부는 예산 전액 또는 대부분의 이월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차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실제 사업 집행과 회계연도를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 2023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과제 중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 1차 사업’은 예산을 전액 불용하였음. 동 사업은 주관기관이 사업 추진 어려움을 사유로 취소를 요청하여 불용한 것이기는 하나,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원 대상과제로 선정되어, 동 과제 추진에 있어 고려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행정안전부는 향후 사업 수행에 있어 관련 규정의 절차에 따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겠음.

【조직국】

4. 정부조직진단관리(1931-300)

- 행정안전부는 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연구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함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동 연구들은 내용상 정책연구용역과 유사하고, 민간위탁 방식을 도입하기 전인 2018~2020년에는 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연구들도 정책연구용역으로 수행하여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한 바 있음.
행정안전부는 향후 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연구에 대해서도 그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공개하여 정책연구결과의 공동이용,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운영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지방행정국】

5. 자원봉사활성화 지원(1141-302)

- ‘국민대통합 김장행사’ 사업은 유사한 사업적 효과를 상정하고 추진되는 기존 사업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국가재정법」에 따른 전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전용을 통한 재원 마련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수의계약 체결 등 집행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유사한 예산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6. 국민통합위원회 운영(1145-300)

- 국민통합위원회는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 내역을 변경하여 ‘국민통합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동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활용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청년포럼 「청년마당」 운영’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는바, 향후 이와 같은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7. 지방자치분권실(7011-257)

- 지방자치분권실의 기본경비 집행 내역 중 관서운영경비 지급한도를 초과한 예산 집행 사례와 관서운영경비 지급한도 제한 규정을 우회한 분할 집행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바, 향후 관서운영경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국고금 관리법」 등 법령과 정부 내 예규의 지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세출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8.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2431-304)

- 동 사업은 2024년 6월말 현재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행정안전부는 자료 제출의 미비 등 행정적 요인으로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타당성 재조사 후 사업 재개 시 잔여 과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타당성 재조사에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보완 등 사업 재추진을 위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9.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 지원(2433-300)

- 본 세부사업의 성과지표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인정률’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인정을 위한 심의·결정 업무의 성격상 심의 건수 대비 인용 건수 비율에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점, 본 세부사업 단위의 성과지표를 설정·운영할 필요성이 크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성과지표를 다른 성과지표로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자치분권국】

1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개발연구등지원(1131-302)

-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정부 출연금을 포함한 전체 세출예산 집행실적 및 연구개발적립금 등 별도재원 운용 현황 등을 확인·검토하여 출연금을 분할교부함으로써 정부 출연금 예산의 편성·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균형발전지원국】

11. 특수상황지역개발(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1231-300)

-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중 일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탁기관의 2023년도 위탁예산 현액은 185억 6,900만원이며, 그 중 58억 6,7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31.6%로 저조한 상황임. 행정안전부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2. 지역발전활성화(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1231-303)

- 행정안전부는 예산지원 없이 한국온천협회에서 온천종사자교육을 위탁받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교육 수료 현황’만 보고 받고 있으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지침」에 따르면 수입을 수반하는 외부위탁사업의 경우 관련 예상 수입액을 공제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해 위탁경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위탁협약서에 따르면 교육 실시에 따른 수입·지출의 회계처리 결산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는 수강료 수입으로 운영되는 온천종사자 교육 위탁사무의 수입·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온천법」에 따른 온천자원관측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한국온천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한국온천협회는 위탁 협약조건에 비해 과도한 업무를 민간업체 용역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위탁사무를 수행하지 않는 직원의 인건비를 민간위탁사업비에서 지급하는 등 위탁사업 수행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한국온천협회의 위탁 협약조건에 맞지 않는 업무 수행체계를 시정하도록 하고, 민간위탁사업비가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3.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확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1938-300)

- ‘디지털 기술 활용 지역문제 해결’ 내역사업은 2021년부터 공모를 통해 매년 10건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해오고 있음. 그러나, 2021년 및 2022년 사업성과를 보면 총 20건 중 14건이 현재 운영이 중단되고, 6건만 운영되고 있어 사업 성과가 저조한 측면이 있음. 행정안전부는 정확한 수요 예측, 중장기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마련 등 면밀한 계획 수립과 운영 성과관리를 통해 해당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지역경제포럼’ 행사를 추진하면서, 행사경비를 11건의 지출로 나누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혼용하여 집행하고,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간에도 이용·전용 절차 없이 통합하여 집행한 바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확정한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신규사업의 추진을 지양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 「국가재정법」을 준수하고,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4. 마을기업육성사업(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3131-301)

- 행정안전부는 2023년에 마을기업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나, 2024년도 예산에 서버 이관 및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현재 마을기업 홈페이지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홈페이지 구축 예산 편성에 면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마을기업 홈페이지 운영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행정안전부는 잔여예산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마을기업 지역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24회계연도에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동일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음. 향후 행정안전부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지방재정경제실】

15. 지방재정 정보화(1332-500)

-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은 매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최소 입찰공고 기간인 40일을 준수하지 않은채 발주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2019년 이후 매년 입찰자수가 1~2개로 과소하여 동일 업체가 이를 수주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동 시행령에 따른 최소 입찰공고 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 지방공공기관 업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은 최소 입찰공고 기간을 미준수하고 있을뿐 아니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위반하여 경쟁입찰을 1회만 거친 후 무응찰·단일응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동 시행령에 따라 최소한 경쟁입찰을 2회 이상 거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

16. 지방세정보화 추진(1333-500)

- 행정안전부는 16개 시·도의 지방세입정보시스템과 서울특별시 시스템을 통합하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3단계 사업의 착수금 48억 7,800만원을 2022년 수탁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급하였음.
그러나 3단계 사업은 반복적 유찰 등으로 착수되지 못하고 장기간 지연되었으며 그 사이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이미 개통되었으므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급된 사업비 48억 7,800만원을 환수하거나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집행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7. 지방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정책추진(1338-300)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아직 제도 운영의 초기이기는 하지만, 납세자의 신청 건수가 적고,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도 불복청구의 인용률은 낮으며, 기각 및 요건 미충족의 비율이 높은 등 저조한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으므로, 영세 지방세 납세자의 불복청구 대리 지원이라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 요건 완화 및 제도 홍보 강화 등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8. 지역경제활성화(1349-301)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착한가격업소가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하는 한편,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의 집행관리를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음.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19.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1131-314)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대면회의 시 민간위원에게 주민등록번호변경 관련 안전 심의시간에 비례하여 안전검토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서면회의 시 심의시간을 산정할 수 없음에도 통상의 지급금액에 따라 안전검토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민간위원으로부터 서면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등 용역 제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안전의 수, 난이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례금을 안전검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운영(1431-301)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향후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용 및 업무용 설비 도입 시 리스계약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리스이자 및 설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리스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조달계약의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안전예방정책실】

21.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2631-301)

- ‘노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은 기존 사업자에 대한 선정 기준 적용 유예 기간 종료(2023년 2월 3일)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인 사업성과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사업 추진상의 효과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보이는바, 행정안전부는 향후 집행 부진을 개선하고 노후 선박 대체 건조 촉진이라는 사업목표를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사업추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국비지원 규모 및 보조금 교부 시기를 결정하는 한편, 사업 추진현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는 등 집행률을 제고하여 예산의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2. 국민안전의식선진화(2632-301)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사업은 실제 집행액보다 높은 금액을 매년 편성함으로써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적정 수준의 1인당 교육단가를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3. 재난안전산업활성화(2631-303)

-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자연재난에 관한 기술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에 대응하는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재난안전기술 관련 사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체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인센티브 제도를 재설계하는 등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4. 안전사고대책 및 재난현장종사자 지원(2632-305)

- 재난현장종사자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을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 코드가 다른 ‘불우소외계층 격려(7011-296)’ 사업과 혼용하여 집행한 것은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원칙을 정한 관련 법령 및 집행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자연재난실】

25. 지진대비인프라 구축(2731-307)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사업은 수요 미확보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2024년 사업의 경우에도 6월 말 기준 당해연도 예산 14억 6,700만원이 전혀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행정안전부는 향후 유사 신규사업 추진 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고, 동 사업 추진방식을 재검토하여 사업 부진의 원인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얻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사회재난실】

26. 사회재난교육훈련 및 역량지원강화(2735-300)

- ‘사회재난 관리제도 마련’ 사업은 용역사업 발주 지연으로 집행이 부진하여 연례적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용역사업과 관련한 연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용역사업의 성격 및 수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 시기를 설정하는 등 용역과제와 관련된 사업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할 것임.
- 행정안전부는 연구용역비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성격에 맞는 비목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게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비목을 변경하도록 하는 등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비상대비정책국】

27.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2634-304)

- 행정안전부는 지원민방위대 지원대상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 및 지방자치단체 간 성공사례의 공유 등을 통해 지원민방위대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지원민방위대 육성’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 사업은 매년 부지확보 지연, 동절기 공사 중지 등 유사한 사유로 연례적인 실패행 부진 및 이월이 반복되고 있어 행정안전부는 향후 집행 가능한 수준의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사전 조사 실시 등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지연 요소를 최소화하며, 보조금 교부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함으로써 연례적인 이월 방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28. 재난안전교육원운영(2633-300)

- 행정안전부는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비목별로 실제 소요와 집행실적을 반영하는 등 적정한 규모로 조정하고, 편성 이후에는 세목 조정 범위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총괄】

1. 인사제도 개선 및 휴직자 관리 필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내부통제 및 외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전반적인 인사 복무 관리 점검을 통해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직에 내부직원만 임명하면서 고위직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관행에 대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철에 임박하여 휴직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력계획 수립을 통해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국회의원선거관리 등 선거관리 세부사업 예산편성 방식 개선 필요

-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다른 세부사업에 중복 편성·운용하는 것은 예산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세부사업의 집행실적과 성과평가를 위한 국회의 예·결산 과정에서 심사를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세입결산】

1.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의채납된 국가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 미반환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징수(재)위탁하고 시효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수납률 제고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수납률 제고를 위한 행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의 반환명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행하고 있어 지방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 반환액에 대한 관리권한 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 미반환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징수(재)위탁하고 시효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수납률 제고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세출결산】

1. 국회의원선거관리(1131-301)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설치 후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기준 시점까지의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을 위한 관련 절차 및 선거구 조정지역 선정과 선거구 조정방안에 대한 합의가 법적 기한 내에서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구기준 시점을 현행보다 앞당기거나 획정위 설치 및 선거구 획정기한을 순연시키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위탁선거관리(1131-30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단체에서 부담하는 위탁선거관리경비를 법률의 명시적 근거 없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고 있는 바, 「국가재정법」상 예산 총계주의 위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고 있는 위탁선거관리경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위탁선거법」 개정이 필요함.

3. 공명선거기반조성(1133-33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날 행사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관(官)주도의 하향식·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장기적으로는 투표일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유권자의 날 기념일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선거방송토론(1135-31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구성 시 임의 겸임 위원을 선임하지 않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임.

5. 위원회기본경비(7111-25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되어야 할 사무실 이전 비용 등을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음.

6. 선거관리역량강화(7132-340)

- 세목조정은 일정 부분 필요한 제도이나 남용될 경우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고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위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합리적인 수요 예측을 통한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7. 국제교류협력(7132-34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상 국외출장이 목적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외출장의 내실화를 제고하고, 방문국, 방문일정을 보다 충실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임.

8. 위원회운영(7132-351)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회의 참석수당을 일비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지양하고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1. 총괄 검토

- 진실화해위원회의 월평균 사건처리 건수에 비추어 볼 때, 2024년 6월말 현재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8,144건의 사건이 진실규명활동 기한인 2025년 5월말까지 모두 완결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진실화해위원회는 남은 기간 동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진화위운영(1031-300)

-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유해발굴지 선정에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고 이로 인하여 당초 편성액 대비 상당 규모의 예산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는 바, 유해발굴지 선정에 있어 집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 조사실 방음벽 설치’ 목적으로 편성된 공사비(420-03목)와 ‘유해발굴 조사검체 보관장비 구매’ 등의 목적으로 편성된 자산취득비(430-01목)를 임의적 필요에 따라 목적 외로 사용하여 「국가재정법」과 예산 총칙을 위반하였는 바, 향후 이와 같은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진실화해위원회 수집자료 CD 제작 및 자료집 발간’ 사업과 ‘한눈에 보는 진실규명 정보공개 플랫폼 구축’ 사업은 부실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예산을 확보한 후 집행연도 들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거나 정책적 고려에 따라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지 않은 사례로, 향후 유사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진화위기본경비(7002-150)

- 토론회 행사와 관련하여 회의장 대관료, 연회장 사용료, 연회장 식음료비를 일반수용비(210-01목)로 집행하여 예산을 비목 용도 외로 사용하였는 바, 향후 예산 비목의 용도를 위반한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인사혁신처 소관】

<세 입>

1. 면허료 및 수수료(13-65-651)

- 우수 인재 확보 및 저연차 공무원 유출 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세 출>

2.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1645-302)

- 2023년 개방형직위의 수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함에 따라 선발을 위한 관련 예산의 불용이 상당분 발생하였는 바, 인사혁신처는 개방형직위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원칙 하에 개방형직위의 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3. 기관운영(총액)(7011-200)

-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청년인턴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적절한 세부사업에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4. 교육과정 운영(2133-300)

- 공무원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 예산의 이용(移用)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공무원연금기금]

<지 출>

5. 퇴직급여(3031-311)

-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등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퇴직자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6. 공무원연금대부(융자)(3142-322)

- 공무원연금기금 증식에 기여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대부 사업을 적정 규모로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7. 복지시설운영(3161-341)

- 공무원연금의 기금증식 및 공무원 후생복지를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8. 지부시설관리(3161-342)

- 「국가재정법」 제3조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여 당해연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당해연도에 납부할 필요가 있음.

9. 보유시설개보수(3261-412)

- 보유시설의 개보수는 시설의 운용 목적에 따라 적절한 세부사업에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음.

10. 기금관리비(3576-201)

- 기금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고, 「국가재정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비목에 맞게 기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경찰청 소관】

【세입결산】

[총괄사항]

1. 세입 예산(과태료·가산금) 수납률 제고 필요

- 경찰청 세입 예산 중 가장 큰 비중(86.2%)을 차지하는 과태료의 수납률이 53.6%로 저조한 실정이므로 수납률 제고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세출결산】

1. 경무인사기획관 기본경비(7111-262)

- 경무인사기획관 기본경비 중 ‘경찰의 날’ 행사 개최의 경우 연례적으로 예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비목별 구체적 예산 확보 없이 먼저 행사를 치르고 관련 경비는 사후에 예산조정을 통해 지출한 것은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저해하는 집행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함.
- 경찰청은 퇴직준비교육 지원 사업의 집행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등 동 사업이 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 피복관리(4231-313)

- 2023년도 피복관리 예산 중 경찰관 피복류 구매 사업에서 상당한 규모의 이월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시범 운영 및 시제품 개선 절차가 지연되었기 때문임. 경찰청은 신형 피복류가 계획대로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현장 경찰관이 안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는바, 향후에는 중·장기적 목표에 따른 장비 개선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집행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장비관리유지(4231-314)

- 한국형 전자충격기는 외국산 전자충격기를 국산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부터 추진된 R&D 사업의 성과로 우리 나라의 치안 환경에 맞게 개발되었고 현재 사용중인 장비와 대비하여 개선점이 뚜렷한 장비인 만큼 많은 예산을 투입한 연구 성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4. 경찰기동력강화(4231-311)

- 경찰청은 예산 편성 시 실구매가를 반영한 현실적인 단가를 책정하여 노후차량 교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5. 경찰인재개발(4132-311)

- 상시학습현장 교육 프로그램 중 경찰교양아카데미, 중간관리자 리더십 교육을 현장 대응력 강화 교육 수요가 증가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임의로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직무전문성 향상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중·장기적인 목표 하에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6. 해외치안협력강화(3133-311)

- 해외 경찰주재관 대상 의료비·실의료비를 편성함에 있어 주재관의 동반가족 수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불용액을 줄이고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7. 범죄대응및재난안전관리(1431-311)

- 경찰청은 노후화된 순찰용 일반자전거의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된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손실보상 제도를 통한 대체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순찰용 일반자전거의 활용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운영방안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

8. 교통과학장비관리(1331-313)

- 무인단속장비 구매·운영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단가 대비 낮은 입찰단가 차이로 인해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낙찰차액을 활용해 계획수립시 반영되지 않은 장비를 추가 구매하고 있는데, 과거 동일한 종류의 장비 입찰단가 추이를 반영해 적정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전 수요조사 등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장비를 임의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 무인단속장비 설치확대 운영에 따른 운영대수, 단속건수, 발송건수,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추이 등을 고려한 적정 우편요금을 편성함으로써 연례적인 불용을 최소화하고, 모바일고지가 발송비 절감 및 수납의 편의성,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현재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9. 도로교통공단출연금(1331-314)

- 공단은 사용자가 퇴직금 운용의 주체가 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채택하고 있고, 법령에 부족시 해소 의무 및 구체적 조치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퇴직연금 지급 및 대내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퇴직금 적립비율을 현재보다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공단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수요를 적절히 예측하고 사업실적을 제고하여 수입예산 집행실적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10. 교통안전활동(1331-312)

- 경찰청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제도” 조기 안착과 사고율 경감 등 효과성 제고를 위해 실제 교통 현장에서의 법규 준수 현황 및 법규위반 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변경된 제도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화 제도 시행 취지에 비해 효과가 미흡하므로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홍보 방안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시행할 필요

11. 경찰복지증진(7135-311)

- 체력단련장 이용요금의 적정성 검토 필요
- 타 공공부문 골프장과 경찰체력단련장(골프장) 이용요금과의 차이, 수입을 상회하는 운영비용 등을 고려한 적정 요금 책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골프를 취미로 하는 경찰공무원과 타 취미 경찰공무원 간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적정 요금 인상 및 타 프로그램 지원 방안이 필요함

12.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수사역량강화(1231-313)

- 경찰청은 신상정보등록 의무 위반 행위자 및 소재불명자 증가로 인한 신상정보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담당인력 확충 및 대면 관리 시 대상자의 수인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 등 제도 개선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스토킹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용 차량 임차경비 편성 시 수요 관서의 필요 차종 및 기간 등을 면밀히 계상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동 사업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임차료와 같이 주된 예산이 과소계상됨으로써 부대 비용인 유류비 등이 불용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경찰청은 진술분석전문가 참여대상을 18세미만 아동으로 확대하여 시행 중이나, 참여 실적이 저조하므로 진술분석전문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3. 의경대체지원(2131-314)

- 유류비의 연례적 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청이 기동대 청사의 난방 방식이 기름보일러에서 전기·가스보일러로 전환되고 있음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임. 이로 인해 난방용 유류의 수요는 감소하고 전기·가스요금 수요가 증가하여 유류비의 집행부진과 공공요금의 부족이 발생하고 있음. 경찰청은 향후 기동대 청사의 난방 방식 변화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의경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구축된 해안경계 과학화 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계약이 사업준비 미흡으로 지연되었는데 유지·보수 지연에 따른 경계능력 저하가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인 해안감시체계가 구축·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14. 대테러상황관리(3134-311)

- 경찰청은 관련 법령의 미숙지로 인해 건설 사업 중단·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고가의 작전·특수차량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한 차고지 설치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1.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49-491)

- 경찰병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경찰관 및 소방관에 대한 진료 뿐만 아니라 일반 진료를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의료기관임. 경찰병원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연간 진료 환자 수를 회복하고 나아가 분원 설치 등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로부터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소방청 소관】

1. 의용소방대 및 소방의 날 기념행사 지원(1131-300)

- 소방청은 ‘소방의 날 행사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례적으로 전용 등을 통해 편성 당시보다 증액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사업 소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여 전용 등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향후 소방청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예산 수요를 반영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2. 국립소방병원 건립(1131-305)

- 소방청은 당초 2023년 말까지 국립소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승인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연례적인 사업 지연으로 인해 개설허가 시기가 2025년 말로 늦추어졌음. 2023년 12월에 시작된 2차수 공사도 그 기간이 당초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는 등 2023년도에도 예산현액의 64.6% 규모인 115억 600만원이 2024년도로 이월되었음. 소방청은 향후 공사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 개원 전 병원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원준비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개원준비단은 연례적으로 인력미채용, 추가 운영비 수요 발생 등을 사유로 지급받은 민간위탁 사업비를 편성 당시 계획과 다르게 집행하고 있음. 향후 소방청은 개원준비단의 인력 충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고, 편성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봄.

3. 산불전문진화차 보강(1132-315)

- 소방청은 총 3개년(2021~2023)에 걸쳐 산불전문진화차 47대를 시·도 소방본부에 배치하려 하였으나,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사업이 연례적으로 지연됨에 따라 예정된 사업 종료시기인 2023년까지 목표 수량 47대 중 24대만 도입되었음. 소방청은 산불전문진화차가 조속히 화재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및 계약절차, 장비 도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 소방안전교육(1134-301)

- 소방청은 ‘소방안전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메타버스 119안전체험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용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시정요구에 따라 콘텐츠 추가 개발 등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향후 소방청은 실효성있는 소방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5. 국립소방박물관 건립(1134-405)

- 당초 소방청은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공사를 2023년도에 시작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지장물 보상문제로 인해 부지 매입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2023년도에 착공하지 못하였고, 2023년도 예산현액의 98.8%에 해당하는 102억 5,600만원이 2024년도로 이월되었음. 향후 소방청은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조속히 부지 매입 협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 단계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가적인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6. 소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1150-500)

- 소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소방긴급구조 데이터망 구축’ 사업은 소방정보통신망을 이중화하여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통신망을 운용하려는 사업인데, 2023년도에 동 사업은 업무 담당자의 비위 의혹 및 계약 관련 분쟁으로 인하여 목표한 2개 망 중 1개 망을 연내 구축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1개망도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지연된 11월에 구축함으로써 데이터망 사용료 10억 1,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소방청은 이중화된 긴급구조 데이터망을 차질없이 구축하도록 하고,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사업 담당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면밀하게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7.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1171-301)

-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청사시설 및 장비유지’ 사업은 연례적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 예산 부족분을 전용 등을 통해 증액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연례적인 예산 조정은 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편성 이후에는 예산액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가항만 통합지원 운영’ 사업은 당초 2023년에 소방정대를 완공하고 소방선박을 인도하여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1년 총사업비 재산정으로 인한 사업지연에 더해 2023년도에도 유관 기관의 선행 공사 지연 등으로 소방정대 완공과 소방선박 인도가 지연되었음. 향후 소방청은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등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추가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8. 지진대비대응 역량강화(1171-305)

- 소방청은 「지진대비대응 역량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훈련장 건립’ 사업과 ‘비축기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 충청·강원대 훈련장은 2023년 12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미비됨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어 완공 시기가 2024년 9월로 지연되었고, 충청·강원대 비축기지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누락과 더불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절차도 거치지 않아 이를 보완하느라 완공 시기가 2024년 12월로 1년 이상 지연됨. 향후 소방청은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고, 인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

9. 중앙소방학교 수입대체경비(1173-650)

- 중앙소방학교 수입대체경비 사업은 교육생으로부터 받은 교육비를 교육과정 관련 예산으로 지출하는 수입대체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인데, 소방청은 징수한 수입대체경비의 일부를 청사시설관리 경비로 사용하고 있음. 청사시설관리 경비는 교육생 수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경비이므로 직접적으로 교육운영과 관련해서 사용하여야 하는 수입대체경비를 청사관리 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향후 소방청은 청사시설관리 경비를 「중앙소방학교운영(1170-300)」 사업의 학교일반운영 내역사업에 계상하여야 할 것임.

V. 대체토론의 요지

1. 행정안전부 소관

<일반회계>

○ 전자정부지원사업과 관련하여,

- 사업기간과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도별 예산을 편성하고, 과제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연례적 실집행부진을 방지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사업은 과제로 선정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사업과 관련하여,

- 행정·공공기관 노후장비 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계획이 순연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전환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자원봉사 활성화지원사업과 관련하여,

-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국민대통합 김장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하여 진행하였는데, 「국가재정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의 전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하여,

- 기초지원계정의 실집행부진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순세 계잉여금으로 처리된 잔여사업비가 해당 사업으로 재편성되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지방교부세와 관련하여,

- 2023년 정부가 국세수입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미교부(불용)하고 그 규모를 임의로 결정한 것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재난대책비 사업과 관련하여,

- 실집행 단계에서 재이월되는 등 연례적으로 3회계연도에 걸친 집행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재난피해 복구를 위한 목적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복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집행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간판문화선진화사업과 관련하여,

-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옥외광고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옥외광고 수익금의 기금화 등을 통해 국가재정으로 편입하도록 함으로써 수익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총괄>

-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과 관련하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외부인사를 임명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없 음

4. 인사혁신처 소관

없 음

5. 경찰청 소관

없 음

6. 소방청 소관

없 음

VI.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1. 행정안전부 소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별첨과 같이 시정요구사항 48건, 부대의견 10건을 첨부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별첨과 같이 시정요구사항 8건, 부대의견 2건을 첨부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별첨과 같이 시정요구사항 1건을 첨부

4. 인사혁신처 소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별첨과 같이 시정요구사항 12건, 부대의견 1건을 첨부

5. 경찰청 소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별첨과 같이 시정요구사항 14건, 부대의견 3건을 첨부

6. 소방청 소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별첨과 같이 시정요구사항 11건, 부대의견 1건을 첨부

Ⅶ. 찬반토론의 요지

1. 행정안전부 소관

없 음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없 음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없 음

4. 인사혁신처 소관

없 음

5. 경찰청 소관

없 음

6. 소방청 소관

없 음

VIII. 심사결과

1. 행정안전부 소관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 의결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 의결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 의결

4. 인사혁신처 소관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 의결

5. 경찰청 소관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 의결

6. 소방청 소관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 의결

IX.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 사항 없음

X.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별첨>

2023회계연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결과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심사 결과 요약 ＞

소 관	세입 · 세출결산
행정안전부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의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의결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의결
인사혁신처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의결
경찰청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의결
소방청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의결

1.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결과 : 총 94건(결산·예비비 합계)

(단위: 건)

부 처 명	변 상	정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중복)	합 계
행정안전부	-	-	1	17	30	-	4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	1	7	-	8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	-	1	-	-	1
인사혁신처	-	-	1	1	10	-	12
경찰청	-	-	-	5	9	-	14
소방청	-	-	-	5	6	-	11
합계	-	-	2	30	62	-	94

2. 시정요구사항(결산)

가. 행정안전부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전자정부지원 사업 연례적 집행부진 및 출연금 정산지연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전자정부지원(정보화) (2031-500)	제도개선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전년 대비 추진과제 수가 37% 감소하고 대부분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집행률이 58.5% 수준으로, 예산 493억원 중 203억원을 이월하고, 일부 사업 과제는 2024년에 사업 수행을 시작하였음. 연례적 사업지연으로 출연금 정산도 차년도 하반기 또는 차차 년도에 이루어지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면밀한 사업계획 하에 사업기간과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도 별 예산을 편성하고, 과제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연례적 실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전자정부지원 사업 과제선정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전자정부지원(정보화) (2031-500)	주의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법률 제정을 전제로 과제를 선정한 결과, 법적 근거 미비로 과제수행을 중도에 취소하 였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향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과제를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3	5G정부망 이용지원사업 활용도 저조 및 운영관리 미흡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행정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고도화 (2040-509)	제도개선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행정안전부는 5G정부망 실증사업 대상인 4개 기관의 이용료를 대신 납부하면서 통신사업자와 기기당 50GB 이상 사용을 기준으로 계약(12억 5,700만원)하였으나, 실제 이용률을 평균 6.5GB 수준으로 저조하였고, ○ 5G정부망 이용을 위해 필요한 기기(노트북 및 5G모뎀) 3,000명 분을 대상기관에 보급하였으나 이 중 일부만 실사용 증으로, 미사용 기기는 회수하여 신규도입 기관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통신망 이용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기관별 실사용 수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불필요한 예산소요가 발생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시범도입기관의 이용률 제고 및 미사용 기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		
4	노후장비 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사업 면밀한 검토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 (2635-301)	제도개선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행정·공공기관 노후장비 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 사업은 기관 실수요 파악 미흡, 연도 중 정부 클라우드 전환계획과 제도 변경으로, 실행이월이 과다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연차별로 클라우드 전환 물량이 재설정되고 전환계획이 순연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 하에 전환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5	사업 수요 사전검토 및 신규 수요 발굴을 통한 집행을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1235-300)	주의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읍면동 주민참여 활성화지원’ 및 ‘읍면동 기능 및 체계개선’ 사업은 실수요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예산을 과다 계상함으로써 집행률이 저조한 문제가 발생하였음.		
		시정요구 사항(안)	○ 행정안전부는 사업수요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으로 신규 수요를 발굴함으로써 실수요 부족에 따른 집행부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6	국가재정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전용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자원봉사활성화지원(1141-302)	주의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2023년 예산에 당초 계상되지 않은 ‘국민대통합 김장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9억 7,400 만원을 전용하였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였는데,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전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가재정법」은 당초에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용을 금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원칙에 위반되며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한 부적정한 집행 방식임.		
		시정요구 사항(안)	○ 행정안전부는 「국가재정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전용을 통한 신규 행사 추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7	수의계약 방식의 연구용역계약 체결 및 용역보고서 임의적 비공개 과다문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민통합위원회 운영(1145-300)	제도개선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국민통합위원회는 출범 후 모든 정책연구용역사업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과제 내역을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보이며, 완료된 용역보고서의 42.9%만 공개하여 정책연구를 공개토록 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음.		
		시정요구 사항(안)	○ 행정안전부는 공정 경쟁에 근거한 계약과 그 결과의 대국민 공개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책연구용역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근거 법령의 취지와 정책연구 공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추진방식을 재검토할 것		
8	사회적경제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지원 보조사업 철저한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1235-300)	주의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사회적경제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법정기한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하였음.		
		시정요구 사항	○ 행정안전부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정기한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가 미제출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9	한국섬진흥원의 출연금 집행 및 정산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섬진흥원 지원(1242-300)	제도개선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출연금이 연초에 전액 교부되고 집행잔액이 반납처리되지 않아 매년 인건비 잔액이 이월되고, 한국섬진흥원 사업비의 실집행이 부진(집행률 57%)하여 출연금이 과다하게 이월되는 경향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실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출연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출연금의 과도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 등 관리를 강화할 것		
10	지방소멸대응기 금의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실집행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1261-300)	제도개선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사업은 매년 1조원씩 기금으로 출연하여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등에 배분되고 있으나,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교부금의 실집행률은 37.8%로 저조하고, 2023년말 기준 전액 미집행된 사업들도 존재하여 사업의 집행 점검·관리가 소홀하였던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사업에 대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업선정·예산교부 단계에서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11	지방소멸대응기 금의 자율성 발휘를 위해 다양한 기금 활용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1261-300)	제도개선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사업은 매년 1조원씩 기금으로 출연하여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등에 배분되고 있으나,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교부금의 실집행률은 37.8%로 저조하고, 2023년말 기준 전액 미집행된 사업들도 존재하여 사업의 집행 점검·관리가 소홀하였던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이 저조한 사유를 점검하고, 집행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금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12	지방소멸대응기 금 운영방식 및 사업구조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1261-300)	제도개선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기초지원계정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지역 특색이나 기금 성격을 반영하지 않고 특정 분야(문화·관광, 산업·일자리)에 편중되거나 지역별로 유사한 사업들이 획일적으로 추진되는 문제가 있음. ○ 동 기금은 기존 지역활성화를 위한 국고보조사업과 차별화하여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역 주도형의 상향식 사업을 추구하고, 기존 분산적 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설되었으나 국가보조사업들과 유사한 사업이 다수 추진되어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함. ○ 또한, 광역지원계정 배분액 중 95% 이상이 비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하여 역내 시·군·구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인구감소지역 집중투자 목적으로 설치된 재원이 역내 시·군·구에 균등 배부되는 형식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문화·관광 분야 등 특정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기금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들이 기존 국고보조사업과 차별화되어 추진되도록 하고, 광역지원계정 재원이 역내 시·군·구에 재분배하는 형태로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며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거점사업이나 동일 생활권 공용시설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		
13	지방소멸대응기 금 기초지원계정 실집행 부진 개선 및 미집행액 사후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1261-300)	제도개선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2022년도 기금액은 당해연도 9월에 배분되어 기초지원계정의 실집행률은 인구감소지역 5.7%, 관심지역 0.4%에 불과하며, 2023년도에는 연초에 기금액이 모두 배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19.3%, 관심지역 22.2%로 부진함. ○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2022년 배분액 중 2023년 말 기준 집행하지 못한 잔여사업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될 예정임.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기초지원계정의 실집행부진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된 잔여사업비가 해당 사업으로 재편성되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14	사업지원 및 성과평가체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1261-300)	제도개선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투자계획 수립 컨설팅’과 ‘빅데이터 분석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 수립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데 한계를 보임. ○ 기초지원계정 사업은 투자계획과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액을 차등 배분하는데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여 기금의 취지를 반영한 대규모, 중·장기 사업이 연단위 성과평가 결과가 불리하게 나타날 수 있고, 재원조달계획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투자계획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연도별 추진실적에 근거한 평가와 차등배분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단기 실적 도출에 유리한 사업에 투자할 유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15	특수상황지역개 발 연례적 실집행 부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특수상황지역개발(1231-300)	제도개선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연례적으로 사전행정절차 이행과정의 제약 등에 따른 실집행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가능성, 지자체의 기존 사업 집행수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규사업을 선정·계획하고, 이월액이 과다한 사업은 연부액을 조정하는 등 연례적 이월 과다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16	특수상황지역개 발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집행을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특수상황지역개발(1231-300)	제도개선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30개 시·군에 국고보조금 2,164억 8,8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현황을 보면, 1,017억 7,600만원을 집행함(47%의 저조한 집행률). ○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는 이를 다시 민간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3년도 위탁사업의 실집행률은 31.6%로, 사업 추진 현황에 비해 과도한 위탁금이 배부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탁사업의 집행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17	부처지역사업 연계지원사업 추진체계 및 사업방식 재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발전활성화(1231-303)	제도개선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부처지역사업연계지원’ 사업은 본래 취지와 달리 지역 주도로 다부처 연계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자치 기구의 역량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음. ○ 지자체별 사업관리를 위한 전담인력(PM)을 두고 있으나, 매년 인력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연례적인 실집행부진이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효과적인 추진체계와 사업방식을 재검토할 것		
18	옥외광고 수익금의 국가 세입세출예산 편입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발전활성화(1231-303)	제도개선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2023년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275억 1,100만원으로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옥외광고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금액으로 형성됨. ○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그 수입 및 지출에 대해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되고 있어 「국가재정법」상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세입세출예산 편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옥외광고 수익금의 기금화 등을 통해 국가재정으로 편입하도록 함으로써 수익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19	인구감소지역 기업이전 활성화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업내용 보완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발전활성화(1231-303)	제도개선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2023년에 기업이전 관련 설문조사와 컨설팅 용역을 시범운영하고 그 성과를 검토하여 본사업 추진을 고려한다는 계획하에 신규 편성하였으나, 실질적 수행이 차년도에 이루어져 효과성과 한계에 대한 분석 없이 2024년도부터 본 사업을 확대하여 편성함. ○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기업이전 활성화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인 민간기업 입장에서 유인·제약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은 실효성이 낮을 수 있으며, 실제 추진 내역상 타부처의 기업 대상 이전촉진 사업이나 부처내 지역 투자유치역량 제고 사업들과의 차별성 확보가 미흡함.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사업 지연으로 시범사업의 성과검토 없이 본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검토 및 기존 사업들과의 차별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방향성을 결정할 것		
20	안산시·포항시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지원사업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1235-300)	제도개선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안산시와 포항시의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지원사업은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2023년 예산이 전액 불용되고, 실집행 이월됨.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두 지역의 공동체 복합시설이 갖는 의의를 감안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 내 갈등을 최소화하고 적기에 시설건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21	효과성 검토 없이 연례적 세목조정을 통한 용역 수행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마을기업육성사업(3131-301)	제도개선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최근 매출액 변화, 지원대비 효과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연례적으로 세목조정을 통해 쇼핑물 판촉용역을 수행하였으나, ○ 이는 1,770개 마을기업 중 1%에 해당하는 일부기업만 선별 지원된다는 점, 행사 참여업체가 모두 영농법인들로 농식품 소비정책사업 등을 통해 유사한 지원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효과성 검토 없이 연례적 세목조정을 통해 계획하지 않은 판촉행사 용역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마을기업 중 일부에 대한 선별지원 방식으로 추진되는 제품 할인행사보다는 보다 많은 마을기업이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원 방식을 모색할 것		
22	마을기업 자립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마을기업육성사업(3131-301)	제도개선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2030년까지 3,500개의 마을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하에 정부는 2023년 말 기준, 3,500개 대비 2,386개(68%)의 마을기업을 지정했음. ○ 다만, 지정취소 기업이 2023년 말 기준 586개에 달해 전체 5곳 중 1곳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고, 매출액 0원인 기업의 수도 2018년 199곳, 2021년 449곳, 2023년 526곳에 달하는 등 연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당초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소득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한다는 목표와 달리 매출과 고용 없이 간판만 걸고 있거나 아예 폐업을 선택하는 마을기업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함.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운영 지표가 부실한 마을기업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개선방안과 이와 연계한 차등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23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수령시 지자체 금고은행 외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방재정 정보화(1332-500)	제도개선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행정안전부는 2023년 1월 개통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를 구축하면서, 보조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는 경우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계좌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함.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를 통하여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외의 금융기관 계좌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		
24	지방재정 관련 전산시스템 제공 자료의 내실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방재정 정보화(1332-500)	주의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공시 대상 자료(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서는 공개 중인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있음. ○ 지방공기업통합공시시스템(클린아이)은 지방공공기관의 재정공시 자료를 통합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나 제공중인 자료가 전전년도 연말 기준으로서 시의성상 한계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각종 지방재정 관련 전산시스템의 제공 자료를 확대하고 자료의 시의성을 확보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25	서울특별시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통합을 위해 한국지역 정보개발원에 기지급된 민간위탁 사업비 조속한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방세정보화 추진(1333-500)	주의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2022년부터 서울특별시 지방세입시스템과 표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3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민간위탁사업비 48억 7,8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 발주한 용역이 유찰되고 서울특별시와 사업범위에 대한 협의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참고로, 올해초까지도 서울특별시는 일부 기능만 연동하는 수준에서 참여할뿐 전면 통합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경인일보,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반쪽... 서울시 "방식 달라 통합 어려워"」, 2024.3.6.).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2022년 지급된 3단계 사업비 48억 7,800만원을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		
26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조속한 안정화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방세정보화 추진(1333-500) 및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1333-503)	주의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당초 2023년 2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시범운영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2024년 2월로 개통이 지연되면서, 2023년 2월 이후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운영 목적으로 승인된 예산으로 기존 시스템을 운영하는 상황 발생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신규 시스템으로서 기존 시스템과 운영비 단가에 차이가 있음에도, 행정안전부와 수탁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정확한 운영비 소요를 재산정하여 협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고 예산을 임의로 집행 ○ 또한 시스템 개통 후에도 오류가 다수 발생하여 지방세 관련 민원만 57만건이 제기되는 등 사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함.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2023회계연도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운영비 실집행 내역이 적정하였는지 검토하고, 향후 지방세 등 납부 과정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27	지방교부세 미교부 및 미교부 규모 임의결정 재발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방교부세 프로그램(1600)	시정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2023년 국세수입 결손에 따라 정부는 지방교부세 예산(75.3조원) 중 8.2조원(보통교부세 7.2조원 및 부동산교부세 1.0조원)을 미교부(불용) - 2023년 국세수입은 예산 400.5조원 대비 85.9%인 344.1조원 수납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2023년과 같이 국세수입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미교부(불용)하고, 그 규모를 임의로 결정하는 집행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28	경기도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대행사의 선수금 임의운용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1349-306)	주의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2024년 1월 공개된 감사원의 경기도 정기감사 결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가 선수금을 임의로 운용하여 자사의 이익을 도모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됨.		
29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3131-303)	주의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사업이 개시된 2018년 이후 약 1.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단기적 성과 도출을 위하여 단기 일자리 중심으로 일자리가 창출되어 실질적인 청년층의 지역정착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목표달성 여부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		
30	국가정보자원관 리원 대구센터 클라우드 전환 추가지연 방지 및 중장기 계획수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신축 (2042-500)	제도개선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대구센터 신축공사 지연(2018년 → 2022년 완공)되어 통합전산환경 구축도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었으며, 2023년도는 구축된 시설로의 입주대상기관 클라우드 전환사업이 지연되면서 범정부 통합전산환경구축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입주 대상 기관의 예산확보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의 추가지연을 방지하여, 센터가 당초 목표대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31	집행 비목 오류로 인한 공사비 전액 이월 재발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이북5도 청사시설 개·보수(1531-301)	주의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이북5도위원회가 청사 보수공사를 추진하면서 집행 비목 오류로 공사가 추진되지 않아 해당 공사비 전액이 이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시정요구 사항	○ 행정안전부는 예산편성 시 오류와 기관 내부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불필요하게 시설 보수·교체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관리 역량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32	협상평가 부적격업체 대상 수의계약 체결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이북5도 청사시설 개·보수(1531-301)	주의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기관의 최대 행사인 이북도민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용역계약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상 제공고를 거치지 않았고, 낙찰 업체의 포기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시간적 제약 상 불가피했다고 하더라도 수행자격을 갖춘 업체와 동 행사 추진경험을 가진 업체도 있었음에도 대안 모색 없이 입찰 당시 협상평가 부적격자였던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함.		
		시정요구 사항(안)	○ 행정안전부는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의 용역체결과정에서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3	임명직에 대한 과도한 인건비 지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건비(이북)(7002-106)	제도개선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이북5도지사의 자격 요건, 임명 절차, 담당 업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북5도지사 5명의 보수로 이북5도위원회 전체 인건비 예산의 약 1/5을 지출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 사항(안)	○ 행정안전부는 이북5도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고, 이북5도위원회 사무처를 강화하여 실무중심 조직으로 개편하는 등 이북5도위원회의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함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4	법률상 근거 없는 명예직 수당 지급에 따른 과도한 인건비 지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이북5도기본경비(7018-258)	제도개선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명예시장·군수 등 명예직 위촉에 대한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대통령령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의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명예시장·군수 등 명예직을 위촉하고, ‘이북5도기본경비’ 사업 예산으로 매월 수당을 지급하여 과도한 인건비 지출이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 사항(안)	○ 행정안전부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 규정을 즉시 폐지하고, 명예시장·군수 등 임명의 남발로 인하여 과도한 인건비 남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35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 위령사업 조성사업 예산 전액 미집행 주의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2431-304)	주의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당초 행정안전부는 전국 단위 희생자 추모시설, 전시장, 기념탑 등을 갖춘 추모평화공원(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일원)을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배정 및 준비 부족 등으로 2024년까지 사업이 연기되었고 총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어서게 되면서 타당성 재조사 진행 중으로 사업예산 전액이 미집행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타당성 재조사 이후 사업이 재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업비 변동, 공기 지연 등 추가적인 변동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계획을 점검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준비하여 총사업비 산정 및 사업 관리 부실로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		
36	제주4·3사건 피해보상금의 과도한 이용 및 불용에 따른 주의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제주4·3피해보상(보상금 등)(2431-306)	주의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제주4·3피해보상(보상금 등)사업은 반복적인 피해보상금 이용에 따라 4·3사건 피해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2023년까지 보상금 지급을 마칠 예정이었던 4,250명 중 83.5%인 3,638명에 대해서만 보상금이 지급 완료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과도한 이용액과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37	제주 4·3사건 피해보상금 의 과도한 이용 및 불용에 따른 제도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제주4·3피해보상(보상금 등)(2431-306)	제도개선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제주4·3피해보상(보상금 등)사업은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가족관계 등 모든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하나, 사실 조사 담당 인력이 3명에 불과하여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사업기한인 2026년 내에 피해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실 조사에 필요한 적정 인력 배치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38	민주주의 기념관 건립사업 관리 미흡에 따른 실집행부진 주의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2435-300)	주의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민주주의 기념관 건립사업(부산, 대전, 창원)은 2023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착공지연으로 일정이 순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적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실집행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민주주의 기념관 건립사업이 추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연례적 실집행부진이 발생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9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사업 관련 제도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2436-300)	제도개선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정부가 제출한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19억원)은 2024년도 예산액(22억원)보다 3억원 정도 감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가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 비용 중 50%를 부담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전가하는 것임.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전액 국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예산 확충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40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결정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금 미지급 주의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여수·순천 10·19위원회 지원(2437-300)	주의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여수·순천 10·19위원회 지원사업 중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경우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1억 3,600만원 전액을 불용하여 희생자의 회복을 지원해야 하는 사업의 본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여수·순천 10·19위원회 지원 사업의 예산 주무부처로서 여수·순천 10·19 위원회의 저조한 사건 처리율로 인한 손실보상금 미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41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결정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금 미지급에 따른 제도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여수·순천 10·19위원회 지원(2437-300)	제도개선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2023년 여수·순천 10·19위원회 지원사업의 희생자·유족 심사 결정은 4회만 이루어졌고, 희생자·유족 신고 건수 7,355건 중 708건만 희생자·유족으로 결정되는 등 희생자·유족 신고 사건 처리율이 저조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희생자·유족 신고 건수 등 미결정된 6,647건에 대한 원활한 심사와 희생자·유족 결정,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위원회 기간 연장을 비롯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42	노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의 수요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2631-301)	제도개선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노후 유·도선 대체 건조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따르면 2020년 19척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총 41척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사업 실수요 부족으로 2023년까지 총 7척에 대한 지원만 이루어져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임 - 대상으로 선정된 후 지원받기를 포기한 경우의 비율이 매년 56%~78%에 이름 ○ 해수면 유·도선 대상 해양경찰청 사업은 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액 부족으로 전용을 통해 증액하였으나, 내수면 유·도선 대상 행정안전부 사업은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사업 특성과 경영환경 악화로 수요가 저조하였음 - 2024년 이후 폐선 대상 선박 수가 24척으로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됨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저조한 사업 수요의 원인을 재검토하여 신규 수요를 발굴하고, 내수면과 해수면 유·도선의 차별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 대안을 모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43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 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실집행을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2631-301)	주의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행정안전부는 2021년 6개, 2022년 7개, 2023년 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나, 전액 실집행이월한 자치단체도 존재하며 2023년에는 실집행률이 55% 수준임 - 2021년도 결산 심사과정에서도 사업지연과 실집행부진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요구하였으나 2023년도에 오히려 실집행률이 더 낮아졌음 ○ 자치단체보조사업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지급하라는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2월에 전액 교부하는 등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과 지방비 분담금 편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나누어 교부하고, 고난이도의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경험을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는 등 적극적 지원을 통해 실집행부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44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사업의 수요 제고 및 실수요에 기반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2731-307)	제도개선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사업은 사업수요 부족 및 연말 보조금 교부 등으로 인해 2022년 예산이 전액 미집행된 것에 이어 2023년 집행률도 43.2%에 그치는 등 집행이 부진한 문제가 있음 - 내진성능 확보가 법적의무가 아니고, 내진보강공사 비용의 20%만 보조됨 (국비 10%, 지방비 10%)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저조한 사업 수요의 원인을 재검토하여 신규 수요를 발굴하고, 내수면과 해수면 유·도선의 차별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 대안을 모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45	재난대책비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2631-301)	제도개선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2022년 교부되어 2023년으로 이월된 재난대책비 중 2,119억 3,700만원이 2024년으로 재이월되는 등 실집행 단계에서 연례적으로 3회계연도에 걸친 집행이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재난대책비는 신속한 재난피해 복구를 위한 목적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복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집행관리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46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의 합리적인 물품관리체계 및 공급망관리계획 구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지원(2734-314)	주의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코로나19의 경험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 재난관리자원이 체계적으로 관리·동원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자원비축창고를 구축하였으나 해당 공간에 비축된 자원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파악이 미흡한 실정임 ○ 2020년 신규사업 착수 시부터 지방자치단체별 자원 보유실태 파악 및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어야 함에도 2023년 하반기에서야 물품관리체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현재까지도 계획 수립 중임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각 지역거점센터와 비축창고 운용에 있어 현 재난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합리적인 물품관리체계와 공급망관리계획을 조속히 구축할 것		
47	재난행정정보화 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및 신규시스템 데이터 현행화 미흡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난행정정보화(3032-501)	제도개선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재난행정정보화 사업은 총 8개 시스템을 종합하여 지원·관리하는 사업임에도 3개 시스템의 운영실적만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2023년 서비스를 개시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은 주요 시각화서비스가 2020년도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고, 제공 오류도 상당하여 활용에 제약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을 통해 운영·관리되는 전체 정보시스템의 안정성과 활용도를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개선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신규 개시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보의 시의성 및 품질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48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 보조금 교부지연에 따른 실집행부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2635-300)	제도개선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은 적기 완료가 중요한 재해예방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부터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일반회계*와 다른 예산배정방식**으로 인해 보조금 교부가 지연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되었음에도 실집행 이월액이 2022년 약 617억원에서 2023년 약 2,131억원으로 크게 증가함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해당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에 따라 사업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해당 사업에 대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연초 수입액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선거보전비용 미반환액 수납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제도개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지적사항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당선무효된 공직선거 후보자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등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실적은 27.5%로 저조함.		
		시정요구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의채납된 선거보전비용 미반환액 등의 수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징수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2	사이버공정 선거지원단 적정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회의원선거관리(1131-301)	제도개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지적사항	○ 최근 실시된 선거에서 계속적으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인원 및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하였음에도 예산을 과다계상하여 불용함.		
		시정요구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예산을 과대계상하여 불용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		
3	사이버공정 선거지원단 지역별 단속 실적 편차 완화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회의원선거관리(1131-301)	제도개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지적사항	○ 일부 시도(전남, 경북)에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근무인원이 부족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나며, 지역별 삭제요청 건수 및 1인당 평균 삭제요청 건수의 편차가 상당히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지역별 단속 실적의 편차가 크지 않도록 시도별 배정된 인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성과관리를 철저히 할 것		
4	위탁선거경비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는 근거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위탁선거관리(1131-306)	제도개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지적사항	○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예산서에 명시되지 않은 자금을 임의로 운용하는 행태는 지양하여야 하나, 위탁선거경비는 법률적 근거 없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함.		
		시정요구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는 위탁선거경비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5	ODA예산 시간계획 조정 및 사업보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1133-334)	제도개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지적사항	○ 당초 15개국 45명에 대해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10개국 33명에 대해 실시하여 전체 예산의 63.6%만 집행하였고, 연수 참석자 평가 결과 온라인 강의 시 영어음성 제공 및 비영어권 자막 제공 필요성이 제기됨.		
		시정요구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참가국 모집 등에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예측가능한 재정운용을 도모하는 한편, 언어소통 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보완할 것		
6	세목별 예산사용 지침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위원회기본경비(7111-250)	주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지적사항	○ 2023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건물 및 건축설비 등 운반용 기구 유지비는 시설장비유지비(210-09)로 집행하여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안내센터 사무실 이전에 따른 케이블, 전화선 등에 대한 비용을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함.		
		시정요구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목별 예산 사용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7	국외출장 내실화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교류협력(7132-345)	제도개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지적사항	○ 2023년에 실시한 외국선거 참관 방문국가와 결과보고서에서 나타나는 주요 일정, 방문단 구성을 살펴보면 해당 국외출장이 외국 선거참관 및 기관교류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있고, 방문국으로 선정한 국가 역시 선거방식 연구에 적합한 국가인지 의문임.		
		시정요구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 국외출장이 목적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외출장의 내실화를 제고하고, 방문국 및 방문일정을 보다 충실히 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안전검토수당 지급 기준 합리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위원회운영(7132-351)	제도개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지적사항	○ 국회 및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던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대체하여 안전검토수당을 상향하여 지급하고, 별도의 용역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 숫자에 따라 일괄적으로 안전검토수당을 지급함.		
		시정요구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안전검토수당의 지급 기준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합리 적으로 재검토할 것		

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1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 실집행부진 주의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진화위운영(1031-300)	주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지적사항	○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은 보조금 교부 지연과 자치단체의 사전행정절차 미흡 등으로 17개소 중 4개소에서 사업이 착수되지 않고 7개소만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등 집행이 부진함.		
		시정요구사항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조금 교부 및 행정절차로 인해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라. 인사혁신처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수수료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면허료 및 수수료(13-65-651)	제도개선	인사 혁신처
		지적사항	○ 2018~2023년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80% 이하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2020년부터 매년 수납률이 하락하고 있음. ○ 2023년 예산편성기준과 실제 응시인원 오차 비율은 32.9%로, 예산편성기준 대비 실제 응시인원 오차로 세입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연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시정요구사항	○ 인사혁신처는 최근 시험별 응시인원 추이의 변화와 그 원인을 분석하여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		
2	우수 인재 공직 임용 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면허료 및 수수료(13-65-651)	제도개선	인사 혁신처
		지적사항	○ 2018~2023년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80% 이하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2020년부터 매년 수납률이 하락하고 있음. ○ 2023년 예산편성기준과 실제 응시인원 오차 비율은 32.9%로, 예산편성기준 대비 실제 응시인원 오차로 세입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연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시정요구사항	○ 인사혁신처는 우수한 인재의 공직 임용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	관서운영경비 제한금액을 초과하는 동일건 분할 집행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시험 시행(1631-300)	제도개선	인사 혁신처
		지적사항	○ 인사혁신처는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관서운영경비 제한금액(건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629만원의 지출건(2023년 5급 공채 제1차시험 등 합숙출제 일반수용비)을 148만원, 208만원, 274만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관서운영경비 제한금액을 우회하였음.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및 기획재정부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0조제1항·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에 따르면, 운영비(210목)는 ‘동일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1회 지급되는 금액’이 건당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시정요구사항	○ 인사혁신처는 관서운영경비 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여러 건으로 분할하여 집행하는 집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개방형 직위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운영(1645-302)	제도개선	인사 혁신처
		지적사항	○ 2019~2022년 간 개방형 직위의 수가 증가하였으나, 개방 효과가 미흡한 직위를 개방 효과가 높은 직위로 변경하거나 자율 직위로 전환하는 등의 과정에서 2023년에는 전년 대비 개방형 직위의 수가 102개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가 감소하였음. ○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와 민간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는 민간 스카우트 제도를 포함한 개방형 직위 임용 실적은 최근 5년간 감소하고 있는 바, 개방형 직위의 수가 감소하면서 우수 민간인재의 공직 임용 기회가 줄어들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인사혁신처는 개방형 직위를 확대할 것		
5	우수한 민간 인재의 공직임용 기회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운영(1645-302)	제도개선	인사 혁신처
		지적사항	○ 2019~2022년 간 개방형 직위의 수가 증가하였으나, 개방 효과가 미흡한 직위를 개방 효과가 높은 직위로 변경하거나 자율 직위로 전환하는 등의 과정에서 2023년에는 전년 대비 개방형 직위의 수가 102개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가 감소하였음. ○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와 민간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는 민간 스카우트 제도를 포함한 개방형 직위 임용 실적은 최근 5년간 감소하고 있는 바, 개방형 직위의 수가 감소하면서 우수 민간인재의 공직 임용 기회가 줄어들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인사혁신처는 개방형 직위의 자율 직위로의 조정 등으로 인하여 우수한 민간인재가 공직에 임용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6	국외훈련비 환수 기준 강화를 통한 제재 실효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무원 인재개발(1732-300)					제도개선	인사 혁신처																													
		지적사항	○ 국외훈련비 환수 기준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한 학업 과정의 이수나 학위의 취득 등 국외훈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현재 학자금의 20%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유럽국가 등 무상교육이 실시되거나 학비가 저렴한 국가의 경우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 국외훈련 국가별 파견 인원과 관련하여 영어권 국가 파견 비율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바, 영어권 국가로의 파견 집중 현상은 국외 교육훈련의 다변화 및 비영어권 전문가 양성 확대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최근 5년간 국외훈련 영어권 파견 인원] (단위: 명, %) <table><tr><th>구분</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r><tr><td>합계</td><td>366</td><td>323</td><td>309</td><td>300</td><td>311</td></tr><tr><td>영어권 국가 소계</td><td>291</td><td>268</td><td>264</td><td>256</td><td>277</td></tr><tr><td>영어권 국가 비율</td><td>79.5</td><td>83.0</td><td>85.4</td><td>85.3</td><td>89.1</td></tr></table>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366	323	309	300	311	영어권 국가 소계	291	268	264	256	277	영어권 국가 비율	79.5	83.0	85.4	85.3	89.1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366	323	309	300	311																																	
영어권 국가 소계	291	268	264	256	277																																	
영어권 국가 비율	79.5	83.0	85.4	85.3	89.1																																	
시정요구사항	○ 인사혁신처는 국외훈련비 환수 기준 중 당초 계획한 학업 과정의 이수나 학위의 취득 등 국외훈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제재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환수 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변경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7	비영어권 국가 파견 비율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무원 인재개발(1732-300)					제도개선	인사 혁신처																													
		지적사항	○ 국외훈련비 환수 기준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한 학업 과정의 이수나 학위의 취득 등 국외훈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현재 학자금의 20%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유럽국가 등 무상교육이 실시되거나 학비가 저렴한 국가의 경우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 국외훈련 국가별 파견 인원과 관련하여 영어권 국가 파견 비율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바, 영어권 국가로의 파견 집중 현상은 국외 교육훈련의 다변화 및 비영어권 전문가 양성 확대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최근 5년간 국외훈련 영어권 파견 인원] (단위: 명, %) <table><tr><th>구분</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r><tr><td>합계</td><td>366</td><td>323</td><td>309</td><td>300</td><td>311</td></tr><tr><td>영어권 국가 소계</td><td>291</td><td>268</td><td>264</td><td>256</td><td>271</td></tr><tr><td>영어권 국가 비율</td><td>79.5</td><td>83.0</td><td>85.4</td><td>85.3</td><td>87.1</td></tr></table>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366	323	309	300	311	영어권 국가 소계	291	268	264	256	271	영어권 국가 비율	79.5	83.0	85.4	85.3	87.1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366	323	309	300	311																																	
영어권 국가 소계	291	268	264	256	271																																	
영어권 국가 비율	79.5	83.0	85.4	85.3	87.1																																	
시정요구사항	○ 인사혁신처는 국외 교육훈련의 다변화 및 비영어권 전문가 양성 확대를 고려하는 한편 전략적 협력국가 및 사업 중심으로 비영어권 국가 파견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8	교육과정 운영 예산의 신중한 편성과 불용 최소화 및 불용액의 편성 목적 외 사용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육과정 운영(2133-300)	제도개선	인사 혁신처
		지적사항	○ 2023년 신입관리자과정에서 편성된 예산 중 2억 3,700만원을 ‘국가인재원 기본경비’ 세 부사업(7018-250)에 계상된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용(移用)하였는 바,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예산 편성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교육시설 부족 등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교차하여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인사혁신처는 교육과정 운영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하고 불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발생한 불용액을 예산 편성 목적과 관련 없는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지양할 것		
9	국제부담금 비관서운영경비 로 지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육기관 교류협력(2134-301)	시정	인사 혁신처
		지적사항	○ 인사혁신처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및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국제부담금을 (“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 국제기구 국가부담금” 600만원)을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하였음. ○ 인사혁신처는 “외국에 있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비”에 해당하여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국고금 관리법」상 관서운영경비는 일반적 지출절차에 따를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비로 한정되는 바, 국제부담금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인사혁신처는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국제부담금을 비관서운영 경비(일반지출)로 지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미수납 급여환수채권에 대한 조기환수 방안 마련 등 수납률 제고 노력 및 장기미수납 급여환수채권 관리 철저	관련사업명	공무원연금기금 - 연금급여금(12-55-551)	제도개선	인사 혁신처
		지적사항	○ 연금급여금 세입항목 중 급여환수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하고, 장기 미수 납 급여환수채권도 다수 존재함. - ‘급여환수금’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37조에 따른 급여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에 따라 이자 및 환수비용 등을 가산하여 환수하는 수입으로, 2023회계연도 계획 현액 139억 3,500만원 대비 293억 3,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59억 7,400만원을 수납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54.5%)함에 그쳤음. - 관리기간별 장기 미수납 급여환수채권 현황을 살펴보면 20년 이상 장기 관리되고 있 는 채권 수가 37건(전체 장기 미수납 급여환수채권 대비 24.8%)에 달함.		
		시정요구사항	○ 인사혁신처는 미수납 급여환수채권에 대한 조기 환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장기 미수납 급여환수채권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		
11	퇴직인원 추계방식 개선을 통한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공무원연금기금 - 퇴직급여(3031-311) 및 퇴직수당(3032-312)	주의	인사 혁신처
		지적사항	○ 퇴직급여·퇴직수당 사업은 연례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있어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 공무원연금공단의 최근 5년간 기금운용계획변경 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기금운용계획 을 5건 이상 변경해왔고, 그 중 2023회계연도의 경우 6건의 변경이 있었음. 증액변경 기준 변경액 규모도 6,500억원~9,100억원 사이임.		
		시정요구사항	○ 인사혁신처는 퇴직인원 추계방식을 개선하여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2학기 대부 수요 추계시 최근 3년치 실적 반영 등 추계 방식의 변경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공무원연금기금 - 대여학자금 융자(3141-321)	제도개선	인사 혁신처
		지적사항	○ 대여학자금은 당초 계획액 3,164억 9,100만원을 계획변경하여 787억원을 증액하였으나 실제로 대부수요 감소로 인한 지출액 감소로 184억원을 불용하였음. ○ 등록금 납부기간인 2월과 8월에 학자금 대부가 약 90% 수준으로 집중되는 만큼 2022년 1학과 2학기의 대부비율을 바탕으로 2023년 3월 말의 대부수요 급증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으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인사혁신처는 2학기 대부 수요를 추계함에 있어서 최근 3년치의 실적을 반영하는 등 추계 방식의 변경을 검토할 것		

마. 경찰청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과태료·가산금 수납률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과태료(56-563), 가산금(58-581)	제도개선	경찰청
		지적사항	○ 연례적으로 과태료의 수납률이 저조하고,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매년 50% 내외로 저조하고, 미수납액 규모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2023년 미수납액은 1조 609억 8,600만원에 달함..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은 과태료·가산금의 수납률 제고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2	구매단가 현실화를 통한 노후차량 교체 적기 이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경찰기동력강화(4231-311)	제도개선	경찰청
		지적사항	○ 2021년 이후 차량 가격의 상승에 비해 예산상 구매단가 상승이 그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계획 대비 구매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찰차량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찰의 업무 수행상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은 노후차량 교체 기준이 경과한 경찰차량의 교체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차년도 예산부터 구매단가를 현실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3	저위험권총 보급계획 이행을 위한 사업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비관리유지(4231-314)	주의	경찰청
		지적사항	○ 저위험권총의 성능 보완이 지연됨에 따라 저위험권총 보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저위험권총 우선구매를 위해 기존 38구경 권총 구매예산을 삭감하였던 국회 예산심사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저위험권총 보급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총기 구매와 관련한 경찰의 예산집행이 본래 예산의 목적과 취지대로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것		
4	한국형 전자충격기의 품질 보완 및 국산장비 사용 활성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비관리유지(4231-314)	주의	경찰청
		지적사항	○ 경찰청은 현재 외국에서 도입한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국회는 2023년 예산안 심사시 “경찰청은 한국형 전자충격기를 충분한 안전성 검사 실시 후 구매하되, 미통과시 기존과 같이 테이저건을 구매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음. ○ 경찰청은 2016년부터 1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전자충격기를 개발하였으나, 최종 납품검사 미통과로 도입이 중단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은 향후 일선경찰관들이 사용하거나 국민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할 때 효능과 안전성 모두를 충분히 검증한 후 구매 및 현장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한국형 전자충격기 개발을 위해 투입한 예산과 연구성과가 매몰되지 않고 국산장비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5	부적정한 예산 전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1131-311)	주의	경찰청
		지적사항	○ 경찰청은 범죄예측분석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을 전액 미집행하고, 이를 청년인턴 인건비 예산으로 전용한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부적정한 면이 있음. ○ 경찰청은 2022년도에 동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편성되지 않은 바가 있어 2023년도에 동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이 미편성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022년 말 112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범죄예측분석시스템을 포함하여 발주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은 향후 예산을 부적정하게 전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6	112지능화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112시스템운영(1431-511)	제도개선	경찰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2022년도에 사업 일정 지연으로 21억 3,900만원이 이월되었고, 2023년도에는 해외 제조 장비 구매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10억 4,800만원이 이월되는 등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였음. ○ 전년도에 일정 지연이 발생하였고, 사업 난이도가 높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사업 심의위원회를 4월보다 앞서 개최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은 사업의 지연가능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심의회를 조속히 개최하는 등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7	무인단속장비 구매·운영 관련 이·불용 최소화 및 미반영 장비구매 지양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통과학장비관리(1331-313)	주의	경찰청
		지적사항	○ 무인단속장비 구매 관련, 편성 당시 구매단가 대비 집행단가 차이로 인해 불용(27.4%)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예상액을 활용하여 당초 계획한 구매 수량보다 많이 구매하거나 구매계획에 없었던 장비를 추가 구매하는 상황이 연례적으로 반복됨. - 불용액: '20년 28억 5,600만원, '21년 6억 8,700만원, '23년 5억 3,700만원 - 집행률: '20년 19.5%, '21년 79.6%, '22년 98.9%, '23년 72.6% - 장비 추가구매: '21년 차량탑재형 단속장비 27대, '23년 회전식 단속장비 3대 추가구매 ○ 우편요금 관련, 2023년 예산안 편성 시 무인단속장비 설치증가에 따라 단속 건수 증가 및 과태료 발송고지서 증가를 예상하고 2022년 예산대비 45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대규모 불용이 발생함(이용 40억원, 불용액 100억원). - (예산액 기준)집행률: '21년 77.1%, '22년 75.5%, '23년 75.5%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은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계획 수립 시 반영하지 않았던 장비구매는 지양하는 등 예산 편성·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통안전활동(1331-312)	제도개선	경찰청
		지적사항	○ 2022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사 시에도 동 사업에 대해 효과성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 지속 여부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시정요구사항을 받은 바 있음. ○ 경찰청의 효과분석 연구 결과, 동 사업과 같은 일회적인 인센티브는 장기적으로 운전을 포기하는 대가로 충분하지 않아 실제로 운전을 하는 고령운전자의 반납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은 동 사업의 효과분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농어촌지역 교통약자 대체교통수단 지원사업 주관부처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와 연계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방식을 검토할 것		
9	교통안전 평가지표 개선 및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통안전활동(1331-312)	제도개선	경찰청
		지적사항	○ 연구용역 결과 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75%가 지자체 관할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에 비해 농촌 지역의 안전지표가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② 농촌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고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지표 평가를 공표하는 등의 제도화와 공식화가 필요함. ○ 교통안전지표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이를 공표하는 것을 꺼릴 수 있고, 교통안전지표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에 대한 구속력, 자료의 일관성 등 실효성 확보가 요구되므로, 이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교통안전지표 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교통안전도 평가·환류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실적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도로교통공단출연금(1331-314)	제도개선	경찰청
		지적사항	○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의 경우, 실물 운전면허증 대비 사용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발급 유인이 적고, 홍보 부족으로 인한 인지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지 않고 발급 목표치를 과다계상한 문제가 있음. - 발급실적: 286만 6,179장 계획대비 125만 8,389장(43.9%) 발급 - 징수실적: 예산현액 406억 9,100만원 대비 184억 9,500만원(45.5%) 징수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강화하고 발급 유인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11	민간경호서비스 지원 사업의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수사인권 및 피해자보호활동(1231-317)	제도개선	경찰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의 효과가 제한적·한시적이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므로 사업의 효과 및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고위험군 대상자 중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및 사업효과를 분석할 필요 - 지원 대상자에게 1회 14일, 1일 10시간의 제한적인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서비스 제공 기간·시간 등 연장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은 민간경호서비스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다면적으로 평가하여, 동 사업의 확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12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신속한 사업 추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의경대체지원(2131-314)	주의	경찰청
		지적사항	○ 경찰청은 의경대체지원 사업 예산 중 25억 3,600만원을 불용하였는데, 그 세부 내역은 급식비 3억 9,200만원, 유류비 5억 3,400만원, 해안경비 임무수행 내역사업의 관리용역비 14억 600만원 등임. ○ 기동대 창설 지연, 가스 및 전기보일러 사용 청사의 확대 등 급식비 및 유류비 수요가 감소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당초 예산 편성이 과대 편성된 측면이 있음. ○ 해안경계 임무수행 내역사업의 경우 유지보수 용역계약 지연 등으로 관리용역비가 불용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은 급식비 및 유류비 예산 편성 시 면밀한 추계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해안경계과학화시스템 유지보수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등 보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13	해외파견자 걱정 수요 산정 및 전지의료검진제 도 지원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해외치안협력강화(3133-311)	제도개선	경찰청
		지적사항	○ 직무파견 경찰주재관 운영비 중 주택임차료의 경우 당초 4개 공관(카타르, 알마티, 다낭, 라고스) 파견인력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개 공관(다낭, 라고스)으로 파견수요가 줄어 2명분의 불용액 1억 1,4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차량지원비 및 정착지원금 등에서도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전지의료검진비는 의료수준이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는 해외파견자 및 동반가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편성되어 있으나, 항공료 등 여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아 실제 검진이 불가 하여 예산액 2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은 해외 경찰주재관 등 운영비 예산 편성 시 해외 파견자 수요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전지의료검진비 예산 편성 시 외교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항공료, 숙박비, 체재비 등 관련 여비를 같이 편성하여 해외파견자 및 동반가족의 실질적인 전지의료검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		
14	국제 경찰청장회의의 회원국 간 순환개최 등 개선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해외치안협력강화(3133-311)	제도개선	경찰청
		지적사항	○ 경찰청은 국제경찰청장회의를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만 4회 개최함으로써 관련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음. ○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주관 인터폴 총회, UN경찰청장회의 등 현존 국제회의 및 국제 치안협의체와 차별화되고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국제경찰청장회의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은 우리나라에서만 개최하고 있는 국제경찰청장회의가 회원국들 사이의 현안을 의제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협력이 이루어지는 다자간 국제협의체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원국 간 순환 개최되는 회의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바. 소방청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 관
1	진료비 지원금 미지급 문제 재발 방지 및 지역 간 지원 편차 완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1131-301)	제도개선	소방청
		지적사항	○ 2023년 예산 부족으로 소방관 개인의 진료비 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음 - 소방청은 11.14일 각 지역소방본부에 1.1.~ 12.11. 진료건은 '23.12.14일까지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달(예산 소진시 지급 불가 명기)하였으나, 일선 소방관서로 공문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소방관들에게 충분히 인지가 되지 못하였고 연말 신청이 집중됨에 따라 '23년 예산 부족으로 325건의 개인 신청 건에 대해 1,823만 3,760원의 상담·검사·진료비를 지급하지 못하였음 ○ 시·도 소방본부간 지원 편차가 있음: 부산 지역 소방본부는 전체 지원 건수의 25%인 1,973건을 지원 받은 반면, 울산지역 소방본부는 약 0.37%인 29건을 지원받음		
		시정요구사항	○ 소방청은 향후 진료비 지원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 소방본부 간 지원 편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 관
2	국립 소방병원 건립 사업 일정의 철저한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립소방병원 건립(1131-305)	주의	소방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을 시작한 2020년 이후 소방병원 건립 사업은 대규모 예산 이월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였음(이월율 '20: 2.2%, '21: 47.4%, '22년: 41.4%, '23년: 36.8%) - 당초 소방병원 건립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소방청은 2023년 12월에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사업일정이 지연되면서 사업기간이 1년 6개월 연장되었고, 소방병원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기가 2025년으로 변경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의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소방병원 개원 시기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 관
3	국립 소방병원 의료 인력 충원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립소방병원 건립(1131-305)	제도개선	소방청
		지적사항	○ 개원준비단은 병원 인력 배치와 관련하여 '23년에 소방병원 부단장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지원자가 없어 현재까지 충원하지 못하였음 - 당초 부단장 충원을 예상하고 편성한 인건비 12개월 분 2억 5,516만원을 집행하지 못함 ○ 소방병원 개원('26년)까지 48명의 의료진을 추가 확보하여야 하나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의 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소방병원 의료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35곳 지방의료원 의사 결원율은 2018년 7.6%(정원 1,037명, 결원 79명)에서 2023년 13.4%(정원 1,422명, 결원 191명)로 증가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 개원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구체적인 의료 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할 것		
4	산불전문 진화차 적기 도입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불전문진화차 보강(1132-305)	제도개선	소방청
		지적사항	○ 산불전문진화차의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은 각각 50%씩인데, 2023년 말 기준 계획된 수량의 약 51.1%인 24대만 도입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의 동 사업 예산 집행률은 매년 70%에 머물고 있음('21:75.9%, '22:76.6%, '23:72.0%)		
		시정요구사항	○ 소방청은 산불전문진화차가 조속히 화재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수립, 계약절차 추진, 납품 등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등 사업 지연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 관
5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119빅데이터 분석·운영(1133-311)	제도개선	소방청
		지적사항	○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신규데이터 등록 건수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음 - '20~'23년까지 3년간 정부지원금 약 103억원이 지원되었음 * 동 기간 중 플랫폼 개발 참여업체의 자체부담금 : 10억 7,000만원 - 신규 데이터 등록 건수는 '20년~'23년 동안 총 3,118건이나, '21년을 제외한 '24년까지 데이터 등록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임 ('20:705건, '21:1,606건, '22:601건, '23:206건, '24.8:26건) * 정부지원금은 '22년 말까지만 유지 ○ 위험정보 중개 서비스에서는 침수, 산사태 등 재난이 발생한 위치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재난의 발생 및 피해 규모에 따라 아이콘이 구별되지 않음 - 아이콘의 색상·디자인 재정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소방청은 플랫폼의 성과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신규 데이터 등록 건수 증가를 포함한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 관
6	국립소방 박물관 건립공사 추가 지연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립소방박물관 건립(1134-305)	주의	소방청
		지적사항	○ 지장물 보상 문제로 인한 연내 공사 미착공 및 대규모 예산 이월 - 소방청은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공사를 '23년도에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지장물(주유소 부지) 보상문제로 부지 매입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23년에 착공하지 못하였음 - 소방청은 주유소 부지를 제외한 1단계 공사를 우선 추진하기 위해 1억 6,000만원의 추가 실시 설계비를 공사비로부터 세목조정('23.6.29.)하여 '23.9.1.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23.12.29.에 공사 및 감리계약이 체결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102억 5,600만원(공사비 193억 3,300만원, 감리비 9억 2,3200만원) 이월액이 발생함 ○ 부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저조 - 소방박물관 예정부지의 토지보상은 소방청이, 지장물 처리와 영업손실 보상은 광명시가 담당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광명시가 보상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사업 지연됨		
		시정요구사항	○ 소방청은 광명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조속히 부지매입 협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 단계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가적인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 관
7	사업 담당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소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1150-500)	주의	소방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사업 담당자의 부적절한 행위를 사전통제하지 못하여 사업지연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2개 회선 중 1개 회선만 연도 내에 운영되었고 다른 1개 회선은 사업 담당자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우선협상자 지위를 둘러싼 가처분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연도 내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고, 소방청은 외부의 민원이 제기된 이후에야 직위해제 처분 등 관련 절차를 착수한 문제가 있음 ○ 동 사업은 비위자(사업담당자)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소송’의 소송대리자로 지정하였고, 데이터망 구축 완료 전에 완료보고를 먼저하는 등 법령위반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2023년 행안위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소방청은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한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절차를 강화하고, 유사 사업 추진 시 업무 담당자의 비위로 사업이 지연되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 관
8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추가 지연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1171-301)	주의	소방청
		지적사항	○ 소방정대 신축 사업은 2023년도 예산 24억 6,400만원 중 22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집행률 89.9%), 2억 5,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함 소방선박 도입 사업은 2023년도 예산현액 198억 100만원 중 163억 7,300만원을 집행하고(집행률 82.7%), 34억 2,100만원을 이월, 700만원을 불용함 ○ 소방선박 도입 사업은 소방선박 설계· 건조·인도 등 전반적인 사업일정이 지연되었고 국가항만 소방정대 신축 사업도 당초 계획 대비 1년 가량 늦어짐 * 동 사업은 당초 2023년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2021년 총사업비 재산정으로 인한 사업지연에 더해 2023년도에도 유관 기관의 선행 공사 지연 등으로 소방정대 완공('23.6.완공→'24.7.완공)과 소방선박 인도('24년 하반기 인도→2025년 상반기 인도)가 지연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소방청은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추가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 관
9	면밀한 장비구입 계획을 통한 적정 예산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시설장비지원(1171-302)	주의	소방청
		지적사항	○ 소방청은 충주119화학구조센터에 무인파괴방수차를 도입하였는데, 차량 및 장비 구매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무인파괴방수차 도입은 '22~'23년 2개년도 사업(총 구매예산:15억원)인데, 22년에는 예산액 4억 5,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23년에는 10억 4,500만원을 편성해서 7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음. '22년에 차량구매비 지출을 당초 예산 편성액보다 많이 하였음(예산 3억 5,100만원, 집행 4억 5,300만원)에도 '23년 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않아 '23년도 예산 8억 1,900만원 중 1억 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구입한 차량에 무전기·영상송출장치 등이 장착되어있어 별도의 운용 장비가 불필요하여 '23년 무전기 등 구입 예산 2억 2,000만원이 전액 불용됨		
		시정요구사항	○ 소방청은 불필요한 장비 구입 계획으로 인한 예산 불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적정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할 것		
10	사전절차 및 관련규정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사업 지연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진대비대응 역량강화(1171-305)	제도개선	소방청
		지적사항	○ 훈련장 건립사업 중 충청·강원대 훈련장 건립사업은 2023년 12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미비됨에 따라 착공이 지연됨(계획: '23. 7. → 현황: '24.3.) ○ 비축기지 건립사업 중 충청·강원대 비축기지 건립사업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누락과 더불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절차도 거치지 않아 'BF 예비인증'을 신청하는 등 이를 보완하느라 착공이 지연됨(계획: '23.1. → 현황:'24.8.) - 예비인증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 유효하다는 점에서 교통영향평가와 동시에 BF 예비인증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음		
		시정요구사항	○ 소방청은 추후 유사 사업 시행 시, 사전 절차 및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서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 관
11	중앙 소방학교 수입대체 경비의 수입·지출 비목 연계성 재정비 및 위탁 교육훈련비 적정 단가 산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타 잡수입(수입대체경비) (69-691) 일반회계 - 중앙소방학교 수입대체경비(1173-650)	제도개선	소방청
		지적사항	○ 소방청은 징수한 수입대체경비의 일부를 청사시설관리 경비로 사용하고 있음. 청사시설관리 경비는 교육생 수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경비이므로 직접적으로 교육운영과 관련해서 사용해야 하는 수입대체경비를 청사관리 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 ‘21년~’23년의 수입대체경비 세입 징수액은 ‘신임 소방공무원 과정 위탁교육생’ 항목이 매년 95%를 차지하고, 세출은 ‘청사시설 관리’비용이 ‘22년,’23년 모두 약 80%를 차지함 - 훈련비용을 지출하는 지자체의 부담이 큰 상황임 : ‘23년 중앙소방학교의 1인당 교육비는 시·도 소방학교의 약 1.5배(부산)~약 3.6배(강원) 수준임		
		시정요구사항	○ 소방청은 수입지출 산정 비목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향후 청사시설관리 경비를 「중앙소방학교운영(1170-300)」 사업으로 조속히 이관하라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위탁교육훈련비용 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3. 시정요구사항(예비비)

해당사항 없음

4. 부대의견

1. 행정안전부는 「국가재정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전용을 통한 신규 행사 추진이 재발하는 경우 국회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시정요구를 의결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며, 유사한 집행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행정안전부는 국세수입 결손을 이유로 한 지방교부세 미교부(불용)가 재발하는 경우 국회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시정요구를 의결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며, 유사한 미교부(불용)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이 조속히 확정되도록 노력한다.
4. 행정안전부는 대구·경북 통합 등 미래지향적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및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5. 행정안전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 및 특례 이양 결과를 평가하고 안정적으로 성과가 입증된 제도에 대해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6. 행정안전부는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
7. 행정안전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위탁사업을 철저히 관리한다.

8. 행정안전부는 경찰·소방의 근속승진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9. 행정안전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등 신설되는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방안 및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10.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이행한다.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외부인사를 임명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발생하는 법률 위반행위를 현저히 낮출 수 있도록 대책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시행한다.
13. 인사혁신처는 9급 공무원 등 저연차 공무원의 임금 인상과 근무 환경 등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14. 경찰청은 최근 경찰청 특진 인원이 확대되면서 그 기준과 심사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특진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 경찰청은 현행 11단계인 경찰 계급이 9단계인 일반직 공무원보다 단계가 많아 발생하는 업무효율 저하 및 승진시험 준비 등에 따른 업무부담 전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16. 경찰청은 경찰 근속 승진 소요 연한 단축과 관련하여 경찰직장협회의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7. 소방청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 등으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